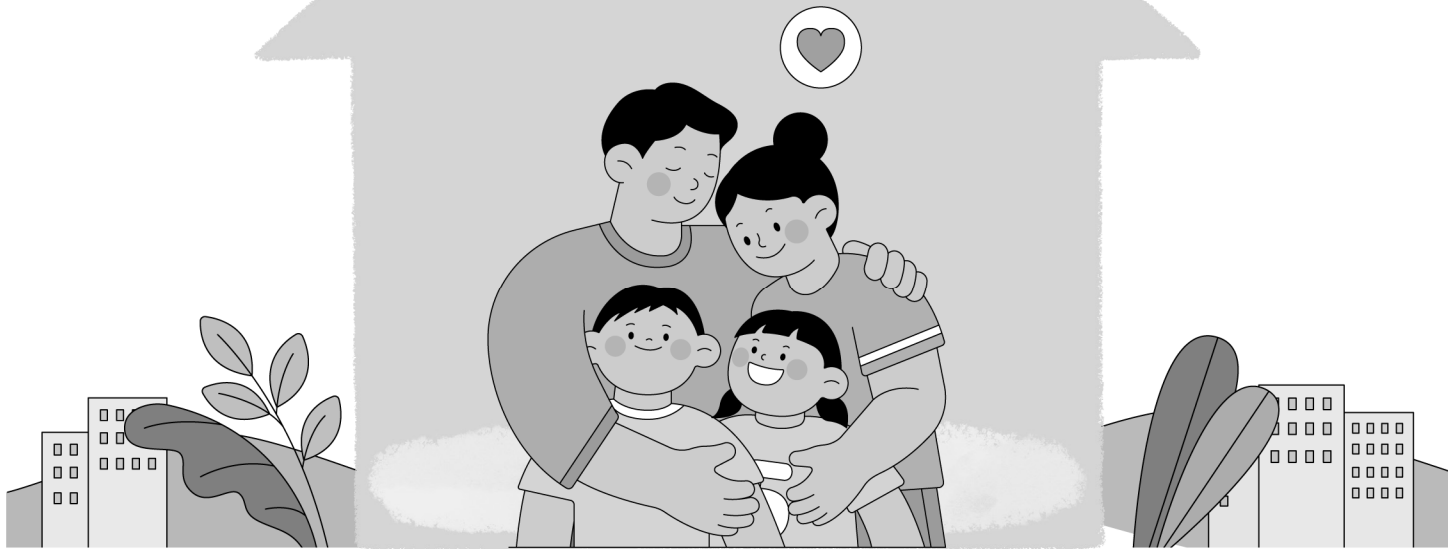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NCRC-03-25-006-10

2025

입양실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CONTENTS

PART I

시작하기에 앞서

- 1. 용어 2
- 2. 아동 중심 입양의 기준 및 원칙 5

PART II

입양의 개요

- 1. 추진배경 10
- 2. 추진경과 12
- 3.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14
- 4. 입양체계 개편 전·후 비교 16
- 5. 입양 업무 추진체계 및 역할 20

PART III

입양의 절차

- 1. 입양의뢰 및 상담 24
 - 1-1. 친생부모 25
 - 1-2. 법정대리인(후견인) 30
 - 1-3. 양자가 될 아동 31
- 2. 입양의 승낙 및 동의 33
 - 2-1. 입양 동의 및 승낙 주체 33
 - 2-2. 친생부모 36
 - 2-3. 법정대리인(후견인) 41
 - 2-4. 양자가 될 아동 43
 - 2-5. 입양동의 철회 45
- 3. 입양대상아동 결정 48
 - 3-1. 양자가 될 아동 48
 - 3-2.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50
- 4. 입양대상아동 보호 및 양육상황 점검 61
 - 4-1. 보호인프라 관리·운영 61
 - 4-2. 입양대상아동 보호 61
 - 4-3.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아동 보호 시
후견인 66
 - 4-4. 양육상황 점검 72
 - 4-5.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75



PART III

입양의 절차

- 5. 입양절차 진행 관련 단계별 협조
 - 요청사항 77
 - 5-1. 결연 등(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 77
 - 5-2. 임시양육결정 및 법원허가 83
 - 5-3. 입양 후 적응지원 92
- 6. 입양의 취소 93
- 7. 입양가정 지원사항(양육보조금 등) 94
 - 7-1. 원칙 및 고려사항 97
 - 7-2. 입양비용 지급 97
 - 7-3. 입양축하금 지급 101
 - 7-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법 제32조 등) 102
 - 7-5.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04
 - 7-6.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06

PART IV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 1. 개요 114
- 2. 입양정보공개청구 이후
가족 찾기 지원 118

PART V

부록

-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22
-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156
-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58



CONTENTS

PART VI

서식

[서식 1]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	167
[서식 2]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	168
[서식 3] 신규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	169
[서식 4] 신규입양대상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170
[서식 5] 욕구조사표	171
[서식 6] 친부모 상황 점검표	182
[서식 7] 아동 상황 점검표	185
[서식 8] 개별보호 · 관리계획서	188
[서식 9] 변경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190
[서식 10] 변경친생부모 상담기록지	193
[서식 11] 변경친생부모 상담확인서	195
[서식 12] 후견인 상담기록지	196
[서식 13] 변경후견인 상담확인서	197
[서식 14] 신규아동 상담기록지	198
[서식 15] 신규아동 상담확인서	199
[서식 1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200
[서식 17] 일시 보호 의뢰서	201
[서식 18] 변경친생부모 입양동의서	202
[서식 19] 변경입양 동의 · 승낙서	203
[서식 20] 변경입양 동의 · 승낙 철회서	204



[서식 21] 가정 복귀 점검표	205
[서식 22] 변경친생부(모) 입양동의서 미첨부 사유서	207
[서식 23] 아동카드	208
[서식 24] 변경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210
[서식 25]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212
[서식 26] 변경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214
[서식 27] 신규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215
[서식 28] 신규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216
[서식 29] 신규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217
[서식 30] 신규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218
[서식 31] 변경아동 양육상황 월별 기록지	219
[서식 32] 변경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221
[서식 33] 변경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24
[서식 34] 신규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	225
[서식 35] 신규결연 수용 의사 철회서	226
[서식 36] 신규결연확인서	227
[서식 37] 신규입양양육결정 취소 신청서(지자체)	228
[서식 38] 변경입양아동 인도 확인서	229
[서식 39] 변경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230
[서식 40] 변경입양비용 지급신청서	231
[서식 41] 변경친양자입양신고서	234
[서식 42] 변경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235
[서식 43] 변경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236
[서식 44] 변경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237
[서식 45] 신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결정 통지서	239
[서식 46] 변경아동적응보고서	240

I

시작하기에 앞서



1. 용어
2. 아동 중심 입양의 기준 및 원칙

I 시작하기에 앞서



1 용어

이 지침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칭합니다.

1 법률상 용어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로 계산함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
- 입양아동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의미
- 국내입양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의미함
- 결연 :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 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임시양육결정 : 가정법원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함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 입양정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정보를 말함
- 사후서비스 :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적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함(법 제31조제1항)
- 입양정책위원회 :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학계·의료·법률·입양 관련 전문가 등 5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장관, 사무국 : 보장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12조)

2 법령 등 약칭

- 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규칙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대법원규칙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국내입양특별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2 아동 중심 입양의 기준 및 원칙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아동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아동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친생부모, 입양부모, 조부모, 친인척 및 후견인 보다 아동 본인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2 보충성의 원칙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4조 b)항에 따라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 등 보호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

3 차별금지 원칙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21조 c)항에 따라 국제입양이 고려되는 아동은 국내입양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망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동 협약 제2조 일반적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다른 아동과 동일한 권리 및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동 협약 제26조 (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경우 해당 아동의 권리는 입양국 국내법에 따른 유사한 입양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와 동등한 것이어야 함

4 사생활 존중 및 비밀 보장의 원칙

-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 삼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함

5 개별 욕구 존중의 원칙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 삼자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함

6 자발적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

-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 삼자가 입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발적 의사결정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함
 - ※ 입양아동의 자발적 의사결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때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야 함

7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 방지

- 입양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또는 다른 종류의 이득을 취할 수 없음
- 중앙당국은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과 부패를 방지하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취할 책임이 있음

8 국가 간 협력 구축

- 국제입양대상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협약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와 기준을 회피하여 협약의 체계 밖에서 국제입양이 행하여지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함

II

입양의 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4. 입양체계 개편 전·후 비교
5. 입양 업무 추진체계 및 역할

II 입양의 개요



1 추진배경

1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추진배경

- 기존 입양특례법의 경우 입양 업무가 국가가 아닌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어 국제규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부합하는 입양 절차 추진이 곤란하였음

* '95.5.1. 발표, 협약 당사국 107개국(2025년 기준), 우리나라는 '13.5.24. 협약가입 서명, '25.6.17. 비준서 기탁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법률안을 제·개정함에 따라 공적 입양체계가 구축되고 이에 따른 아동 중심 입양절차 추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 명칭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약칭 : 헤이그입양협약)
- 배경 : 국제입양 명목의 아동 매매, 약취 우려 형태 방지 필요
- 협약체결 : '93.5.29. 채택, '95.5.1. 발효, 현재 협약당사국 107개국(국내에서는 '25.10.1. 발효)
- 원칙 : 원가정 보호 우선 → 국내 보호 가정 → 국제입양
- 요건 : 출신국(State of origin)/입양국(Receiving state)의 권한 당국의 결정(인정), 확인
 - * 아동 입양가능성(최선의 이익), 자유의사에 의한 입양 동의, 양부모 적격, 입양 후 영주자격
- 협약 이행을 위한 중앙당국 지정, 일정범위 내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인가단체에 위임
- 국제입양 담당기관
 - 중앙당국 : 체약국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중앙국가기관을 중앙당국으로 지정
 - 권한당국 : 협약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체약국이 임명
 - 공공기관 또는 공인단체 :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당국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공인단체에 위임 가능

2 추진경과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수립
- 1961년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인직무에관한법률」,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정함과 동시에 간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1976년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제정
 - 국내입양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법령 범위 확대 및 동의요건 강화
 - 국내 - 외국 입양기관 간 협약체결 근거 마련
-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부개정, 법률 제4913호)
 -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부모의 자격조건 강화·사전교육 및 사후관리·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시행
 - 입양될 아동이 미아 등인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하여 국외입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 199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5670호)
 - 입양업무 절차 간소화, 불법입양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 2000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6151호)
- 2004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7183호)
 -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수수료·기타 양육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7448호)
 -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규정, 입양의 날 지정 및 입양 알선 비용 보조 근거 마련
- 2007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8435호)
-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부개정,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제명 변경
- 2015년 「입양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13322호)
 - 국외입양 사후관리 의무화
- 2020년 「입양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17788호)
 - 입양기관 변경신고 수리 규정 신설
- 2023년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제19555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9553호),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 제20218호)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여 국제규범(헤이그협약)과 절차를 준수하는 입양체제로 개편함

3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 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 하에 수행

■ 기존 보호대상아동 입양 절차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입양기관이 보호하면서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연해주고 법원허가 거쳐 입양 완료 → 입양기관이 입양가정 사후관리

■ '25.7월부터 입양 절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 하에 수행)

지자체가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입양 전까지 보호 → 복지부(위탁가능)가 예비양부모 조사, 복지부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 법원이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 복지부(위탁가능)가 아동 적응상황 점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려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10조)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제12조)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제13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3항 및 제39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제2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31조)
-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

4 ▶ 입양체계 개편 전·후 비교

○ 적용범위

- **(현행)** 입양특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외 입양만 규율
- **(변경)**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입양과 일반 아동(전혼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복지부가 관리

〈 현행 〉				⇒	〈 변경 〉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외국으로	국내로			외국으로	국내로	
일반 아동	민법	민법		⇒	민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보호 아동	입양 특례법	입양 특례법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전 보호

- **(현행)** 지자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고 그 후에는 입양기관이 아동을 보호(후견인 입양기관장) 하며 입양절차를 진행
- **(변경)** 입양기관이 아닌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

절차	기존	개정
① 친생부모 상담	입양기관	지자체 (‘21.6월 아동복지법 기 개정)
② 입양대상아동 결정	보호자의 입양 동의	
③ 아동 보호	입양기관	지자체

○ 예비양부모 조사 및 결연

- **(현행)** 입양기관이 양부모 신청을 받고 상담·조사하여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하고 이후 법원허가 지원
- **(변경)** 복지부가 양부모 신청을 받아 상담·조사(이상 위탁가능) 후 입양정책위원회(신설) 심의 거쳐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

절차	기존	개정
①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	입양기관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② 양부모 상담·조사·교육		복지부(위탁기관)
③ 양부모 자격 (적격성) 심의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④ 아동-양부모 결연		

○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 **(현행)** 결연 후 법원에 입양허가 진행하되, 허가 전 입양기관과 양부모가 협의하여 입양전제위탁(양부모가 아동을 양육) 가능
- **(변경)**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 허가 전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이 있어야 가능

○ 입양 사후관리

- **(현행)** 입양기관은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가정 사후관리
- **(변경)** 복지부장관이 입양 성립 후 일정기간 적응상황 점검·서비스 지원(위탁가능), 국적취득확인 등 사후관리, 국외 입양이 취소된 경우 아동 귀국 등 필요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입양정보공개**

- **(현행)**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이 요청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공개
- **(변경)**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이 요청하면 입양정보를 공개, 입양기관 및 과거 입양을 진행했던 모든 기관(시설·지자체 포함)은 관련 기록물을 보장원에 이관해야 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절차	기존	개정
사후관리	입양기관	복지부(위탁기관)
정보공개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 **사회복지법인 등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입양 신청,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입양인식 개선·양부모 교육·홍보 강화

○ 국제입양 시 국가 간 상호 보증절차 마련

- 복지부를 국제입양 중앙당국으로 지정, 해외 중앙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 출신국 가정법원에서 허가한 국제입양 효력 상호 인정

*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보증

5 입양 업무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주체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개정 - 입양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입양 홍보 등 -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및 입양 전반의 업무 총괄 -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 업무위탁기관 평가 및 관리
입양정책 위원회 (위원장 :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입양에 관한 개별 사항(아동 - 양부모 결연 등) 심의·의결
입양정책 위원회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국내외 입양 절차별 업무 수행(예비양부모 접수 ~ 사후서비스 모니터링) - 매뉴얼 개발 및 입양 실무 종사자 교육 - 지자체(시·도, 시·군·구 등) 및 위탁기관 등 협의체계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정책 지원 및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정책 수립 및 지원 - 입양 업무 지침 마련 및 배포 - 입양 관련 통계 구축, 해외 정책조사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양인식개선 홍보, 입양의 날 운영 • 정보공개 청구 지원 및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기록 영구 보존 및 관리 -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업무관리시스템 포함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추진주체	주요 역할
<p>광역지자체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입양 정책 총괄 및 사업 인프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군·구 입양대상아동 보호 인프라(가정위탁, 시설 등) 총괄 및 조정 - 국내외 입양 관련 진행 및 적응지원 현황 총괄 관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양인식개선 홍보
<p>기초지자체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및 양육상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상담·동의 확인 및 입양대상아동 결정 - 입양 완료시까지 보호(후견인) 및 양육상황 점검 - 입양대상아동 보호 인프라(가정위탁, 시설 등) 운영 • 입양대상아동 관련 입양절차 진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절차 진행(결연 심의, 법원허가, 아동인도 등) 관련 사무국, 가정법원 등 요청에 대응 - 입양절차 진행 및 아동상황 통지(친생부모 신청시) - 입양아동 적응지원(임시양육 포함)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제공
<p>위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양부모 상담·조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가정환경 조사 등 실시 (초기상담, 심층상담 등) - 가정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사무국) - 사무국 요청에 따른 입양 절차 지원(결연, 법원허가 등) • 입양 후(임시양육기간 포함) 적응 상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양육 중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 입양 후(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가정 적응지원 -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및 보고(사무국) -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 안내 - 양부모와 양자 대상의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p>가정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과 관련된 법적 사건 처리 절차 운영 - 결정 사실에 대한 통지 역할 수행 - 대법원규칙 제·개정

Ⅲ

입양의 절차



1. 입양의뢰 및 상담
2. 입양의 승낙 및 동의
3. 입양대상아동 결정
4. 입양대상아동 보호 및 양육상황 점검
5. 입양절차 진행 관련 단계별 협조요청 사항
6. 입양의 취소
7. 입양가정 지원사항

Ⅲ 입양의 절차



1 ▶ 입양의뢰 및 상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를 요건 등)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후견인(친생부모는 제외한다)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른 입양절차에 관한 사항
2. 입양 동意的 요건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5.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친생부모

- **(내용)** 친생부모가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양육 시 지원 및 양육 관련 정보, 입양 절차·요건·효력 등에 대한 상담 제공
- **절차**
 - ① 친생부모는 친생부모 주소지 시·군·구에서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입양 전반에 대한 상담(p.28 [표1] 참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대면 필수)
 - 다만, 예외적으로 친생부모가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는 상담을 진행하고 친생부모 주소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함(다만,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아동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 ② 시·군·구는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5, 6, 7), 친생부모 상담기록지(서식10),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서식11)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친생부모 상담 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건강,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기본증명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서식11)는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여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확인하여야 함

-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서식9)은 시·도에 매주 제출하고, 시·도는 해당 현황을 취합한 후, 전월의 실적을 매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참조: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와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시·군·구가 다른 경우,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에서 보호조치 결정 현황을 확인하여 시·도에 제출

③ 상담 후 친생부모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 상담한 시·군·구는 친생부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 방문 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서식16)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취합하여 분기별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하여야 함(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방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200천원 이내)

- 원가정 양육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친생부모 상담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변경된 주소지 시·군·구에 그간 상담내용, 방문 일정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이 때 변경 후 주소지 시·군·구는 인계받은 내용을 확인, 모니터링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상담내용

① 친생부모의 의뢰 사유를 고려하여 원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우선 안내

-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원가정 보호 가능성 또는 추후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파악

* 급여·수당 등 경제적 지원, 임신·출산, 출생신고 등 양육 관련 정보·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족상담전화 ☎1577-4206, 가족센터 ☎1577-9337 등), 한부모가족 시설 연계 등

-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예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 등) 지원

- ② 입양절차,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등 입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 친생부모 대상 입양절차 관련 안내

- **(입양동의)** 친생부모는 입양 동의 후에도 입양허가 전까지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입양허가 이후에는 아동의 입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입양동의를 반복할 수 없음
- **(입양허가)** 가정법원에 신청 시 아동의 출생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 제출되어야 함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의 심리 및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심문 또는 조사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양허가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 **(친양자입양신고)** 입양허가 이후 양부모가 친양자입양신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동의 기록이 삭제됨
 - 아동이 입양 전 사망하거나 입양허가 후 친양자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기록이 유지되며, 입양 후 파양된 경우 다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됨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 관계 등록 예규)」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자인 경우 발급 가능

-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단,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양부모의 동의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표1]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내용

분류	내용
친생부모 양육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초기위기지원, 양육지원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취업·창업정책, 생계정책, 상담·치료정책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국외입양 과정 및 단계별 친생부모의 준비사항 안내 • 입양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양육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 자녀를 입양 보낸 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 -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을 때, 친생부모는 가정법원 입양 허가 결정 전까지 입양 절차 진행 과정,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해 아동의 후견인으로부터 통지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입양동의를 요건 및 입양동의를 철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동의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강조 • 입양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에 동의한 후에도 법원의 입양허가 전에는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

분류	내용
입양의 효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함 - 입양아동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됨 (친생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됨) • 입양의 효력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함 -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입양신고하여야 함 • 입양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생부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정보공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인은 입양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입양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그 사실을 입양아동의 친생 부모에게 알리고, 친생부모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 •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거주지역명(시 · 군 · 구 단위) · 입양동의사유 · 입양일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출생일시 및 출생 장소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생부모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생부모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는 공개할 수 없음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 공개 가능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2 법정대리인(후견인)

- **(내용)** 후견인 등 친생부모 외 법정대리인이 입양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아동의 입양 승낙을 하기 이전에 입양 전반에 대한 상담([표1] 참고) 제공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입양 상담을 통해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표시)을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입양 승낙에 동의하거나, 대리하여 승낙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절차)**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5, 7), 후견인 상담기록지(서식12)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후견인이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후견인 상담확인서(서식13)는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여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확인하여야 함
 - ※ 단, 아동 주소지 시·군·구 지자체장이 후견인(예. 보호출산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로 증빙 가능하며, 상담기록지, 상담확인서는 생략
- **(필수 상담내용)** 입양절차, 입양동의*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등(아동의 상담내용과 동일)
 -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

3 양자가 될 아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내용)** 친생부모 등 입양을 의뢰받은 경우,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상담·안내하고, 입양에 대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
- **(절차)**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입양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 상담기록지(서식14), 아동 상담확인서(서식15)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대면 필수)
 -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라도 아동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을 상담기록지 등에 작성하여야 함**
 - ※ 단, 아동이 언어발달 지연, 언어장애 등의 경우 의견 청취 가능한 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동 상담기록지 및 아동 상담확인서 생략 가능
- **(필수 상담내용)** 입양절차, 입양동의*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등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과 입양 절차 설명 시 참고사항**

• **입양에 대해 설명하기**

입양은 ○○○에게 엄마, 아빠, 동생 또는 누나(형)가 생겨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지금 ○○○와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지금 지내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아빠, 엄마, 형(누나), 동생 등과 살아갈 거예요.

• 입양절차 설명하기

○○○가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먼저 동의해야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요청한 부모님들과도 많은 대화와 조사를 통해 ○○○가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가 어떤 부모님과 가족이 되는 게 적절한지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게되면 ○○○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가 원하지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모님과 ○○○이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 확정 해주기 전까지는 ○○○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 거절하고 싶다면 선생님에게 꼭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입양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 입양 정보공개청구제도 설명하기

나중에 ○○○가 어떻게 입양이 되었는지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정보 공개청구 제도’라고 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동권리 보장원은 ○○○에 대해 알고 있는 입양 정보를 ○○○를 낳아주신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에게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를 낳아주신 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빼고 ○○○에 대한 정보만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부모님의 동의를 있어야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2 입양의 승낙 및 동의

1 입양 동의 및 승낙 주체

- 입양상담 후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포함) 및 친생부모가 입양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승낙하여야 함
 - 입양에 대한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됨
 - 입양 동의 승낙 절차는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진행되어야 함
- 입양을 동의·승낙하는 친생부모, 후견인(법정대리인), 아동 등에게 추후 입양절차 진행 과정에서 아동의 국내입양이 불가할 경우,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양이 곤란한 아동 또는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해당 결정이 있는 경우, 사무국(보장원)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로 통보하게 되며, 입양 곤란 아동 결정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 하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승낙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표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입양 동의·승낙서 작성 서식

아동의 연령	구분	입양 동의서 작성 여부		
		아동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13세 미만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 (별지 제4호 서식)	×
	친생부모가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친생부모가 없고, 다른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	○ (별지 제4호 서식)
13세 이상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친생부모가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친생부모가 없고, 다른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법정대리인 :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미성년자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와 후견인(법원 또는 법률에서 지정한 자 등)이 있음

2 친생부모

1) 절차

- ① 원가정 양육 관련 상담 이후 친생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대면 필수)
 -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대신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함
 - 해당 동의서는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입양정책위원회 결연 심의 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됨을 안내하여야 함
- ② 입양동의서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동의서의 서명·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신분증 사본 등
 - 친생부모 상담기록지(서식10)는 최소한의 숙려기간, 진행횟수(최소 3회 이상 권고, 대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③ 친생부모에게 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아동 주소지 시·군·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결연심의, 보정명령 등 대응), 입양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상태에 대하여 통지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하거나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조치 결정 후 친생부모가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제출받은 시·군·구는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
- 단, 시설장 등이 후견인인 경우 통지신청서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후견인을 통해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 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에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2) 유의사항

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미혼부) 또는 친생모(미혼모)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라도,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친생부모 중 일방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한 과정과 근거를 아동카드(상담자 의견)에 기록하고, 친생부(모) 입양동의·승낙서 미첨부 사유서(서식22)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동의를 받지 못한 일방이 인지청구할 경우 입양동의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 대해 안내 필요)

- 단,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단, 증빙서류*나「미첨부 사유서(서식22)」제출 필요)

* 친권 상실에 대한 판결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

- ②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입양동의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단독 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정대리인 중 일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증빙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다른 일방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③ 유기아동·보호출산아동 등 친생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법정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입양 동의·승낙을 받아야 함(☞ p41. 3. 법정대리인 부분 참고)

3) 입양숙려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를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친생부모는 아동을 출산한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입양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 동안에는 아동을 직접 양육·보호하는 것이 원칙임
- *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가 가능하나,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 시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등을 안내하며 최소한 숙려기간 동안에는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것을 권고하여야 함
- 이는 친생부모가 출산 후 아동과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동과 부모 자신의 미래와 입양 결정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친생부모가 숙려기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는 해당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숙려기간의 계산 방법

-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일로 기간을 만료함
 - (예시) 2024.6.11.(화)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6.18.(화)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2024.6.30.(일)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7.7.(일)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 * 출산 후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으로 인해 아동이 신생아실에서 머무르는 경우 해당 기간은 숙려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며,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경우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해야 함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상담 여부 : 미혼·이혼 한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입양상담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표 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3 법정대리인(후견인)

1) 내용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거나(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의 입양 승낙에 동의하여야 함(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2) 절차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후견인에게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유기·보호출산 아동 등 친생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법정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입양 동의·승낙을 받아야 함

- 후견인이 시·군·구청장인 경우 입양동의·승낙서에 동의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하고 직인 필수

입양 동의·승낙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필수작성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가능	필수작성
	주소	연락처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무실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후견인
필수작성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승낙자) 지자체장 직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② 입양 동의·승낙서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후견인확인서
-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용증명서 등으로 확인 필요) 등

- 다만, 입양 동의·승낙 당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 상담기록지 및 상담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입양동의·승낙서의 일부 항목(동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은 기재하지 않고 제출함

4 양자가 될 아동

1) 내용

- 양자가 될 아동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입양의 승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연령(13세 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입양 승낙에 대해 동의하거나, 대리하여 승낙하여 아동의 의사표시를 지원하여야 함
 - 다만,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입양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음
 - * 법정대리인이 친생부모인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 이행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2) 절차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지원을 통해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도록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도록 함
 - * 아동이 자유로운 의사로 입양의 승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지연, 언어장애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함
- ② 입양 동의·승낙서에는 친생부모, 후견인 등을 통해 출생신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친생부모 정보 기록), 아동수첩(있는 경우), 아동의 의료기록 등

※ **입양동의와 함께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친생 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을 일시보호 하여야 함
 - 가정위탁,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한 인프라가 친생 부모 주소지 시·군·구에 부족한 경우 시·도는 시·군·구가 아동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다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 즉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상담 시·군·구에서 일시보호하고, 보호조치 결정 시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협조 요청하여야 함(다만,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아동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5 입양동의 철회

- 법 제15조4항, 제16조3항에 따라 친생부모,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은 입양 동의·승낙 이후에도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이 있기 전에는 입양동의 철회가 가능함
-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친생부모,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은 입양 동의·승낙을 진행한 시·군·구 또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하여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함. 철회서를 입양 동의·승낙을 진행한 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시·군·구는 현재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를 전달하여야 함
 - *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 제14조 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생략)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 현재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 복귀 점검표(서식21)’를 작성(원가정에서 보호 중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원가정 복귀 조치 이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 심의 가능

* 아동이 원가정 외 위탁가정, 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경우에도 ‘가정 복귀 의견서’ 생략 가능

- 입양 동의 철회 후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경우, 친생부모에게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방문결과(서식16)를 시·도에 제출(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서식11) 작성 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서명 날인

- 원가정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거주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① 최초 상담한 담당자가 친생부모와 방문 일정 등 상의 후 거주지 담당자에게 인계(그간 상담 내용 및 방문 일정 등), ② 거주지 담당자는 내용 확인,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방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200천원 이내)

- 가정법원 허가 신청 이후 임시양육결정 중에 친생부모 또는 아동(법정대리인)이 입양 승낙·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시양육결정 취소도 함께 신청하여야 함

3 입양대상아동 결정

1 양자가 될 아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은 “시·도지사 등” 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

시·군·구 입양대상아동 결정 시 고려사항

1. 입양 동의 여부 확인

- 만13세 이상 아동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친모, 기본증명서(상세) 후견인이 동의 여부
- 미성년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가 확인
- 친생부모 일방의 동의 사유 및 관련 증빙 확인(미참부사유서, 소재불명 등 확인)

2. 아동 및 친생부모 입양 전 상담

- 친생부모의 원가정 양육가능성 확인 여부, 학대 여부 등 검토 필요
- 만13세이상 아동, 친생부모, 후견인에게 아동 직접 양육 지원사항, 입양 법적효력, 입양 정보 공개청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여부
- 의사소통 가능한 연령 아동도 의무는 아니나 본인 입양 사실 인지에 대한 상담 진행 여부

3. (유기아동) 부양의무자 공고 기간 준수 여부 확인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연월일, 공고 결과 등), (보호출산아동) 친생모 인적정보 등 미표기 여부 확인
4. 서류 내용 관련 아동입양서류 서명란 누락 및 일치 여부, 서류 일자 정확성 여부(입양속려기간 준수, 절차 (친생부모 상담, 입양동의는 사결위 전 진행 등))
5. 아동 중심의 입양을 위한 고려 사항(참고 :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입양	입양 외 보호 등
- 아동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가족에게 소속 되는 것이며, 평생의 구속으로서 가족을 이루는 것일 경우	- 아동이 친생가족과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아동에게 안정적인 대안 양육 욕구가 있으나 정체성 변경을 포함한 평생의 구속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의 친생부모(후견인)가 아동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 아동의 친생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아동이 친생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아동이 과거를 건강히 이해하고 지지받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할 기회가 필요할 경우	- 아동의 발달과정의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아동이 입양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경우	- 아동의 친생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경우 - 아동이 친생부모, 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양육자와 강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경우

2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와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 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입시양육결정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준비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친생부모 상담 내용 및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조치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 작성하여,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 보호유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논의함
 - 아동카드(서식23),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8) 작성 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 전(가정위탁, 시설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 시·군·구 사례회의의 시, 시·도(필요시),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또는 시설 종사자,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향후 입양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함
- ②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조치인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 또는 시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 (p61, 4. 1) 보호인프라 관리·운영 참고
 - 최대한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입양 전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 양육시설 등)를 검토하되, 가정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시·군·구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에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 또는 시설 배치를 공문으로 요청 → 시·도는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결과를 1주일 이내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에 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전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함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입양 적합성, 보호방안 등 사례회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p48. 입양대상아동 결정 시 고려 사항 확인)
- *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조치 의뢰 후 가급적 2주 이내 개최하도록 노력함
 - ** 아동과 친생부모(후견인)의 상담기록지 등을 통해 아동의 입양에 대해 충분히 청취하였는지 고려 필요

- 입양대상으로 결정될 아동이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최대한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원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보호가 어려울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입양)와 입양 전 보호방안(가정위탁, 양육시설, 원가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 결정

②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입양으로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 아동에게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25)를 7일 이내 송부하여야 함
- 또한,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하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서식24)*과 함께 시스템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 *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내용은 타 보호조치 아동과는 구분하여 개인별로 작성하되, 회의록이나 회의 내용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추가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승낙서, 상담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입양대상아동결정확인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 아동 본인(법정대리인 포함), 친생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가정법원 또는 관계기관 등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함
 - * 별도 신청인 없이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할 시,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견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자체장이 후견인인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필수작성	
신청인	성명 지자체장 직함으로 기재 가능 (ex. 종로구청장)	■ 아동과의 관계 ▶ 본인 [] ▶ 친생부모 [] ▶ 후견인 [] 필수작성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가능		
	주소 지자체 주소		
	연락처 아동보호전문요원 사무실 연락처		
입양 대상 아동	성명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소	보호출산 아동의 경우 미기재, 주민등록번호 발급 이후 2차 제출 필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참고] 입양절차 진행 시 구비 서류 목록(음영 처리된 서류 시스템 필수 입력사항)

☼ 친생부모 입양의뢰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1	아동 발급 서류	○	아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아동 기본증명서(상세)	
3			아동 주민등록등·초본	
4		유/무에 따라 구비	아동 전입신고서(전 세대주 서명/도장 必)	
5	아동 의료 관련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과지	
6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7			예방접종 확인 관련 서류	
8			청력 검사 결과지	
9			친생모 혈액검사지(B형 간염, 에이즈, 매독검사 포함)	
10			아동 혈액 검사 결과지 (혈액형,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포함)	- 검사와 관련한 영상 CD가 있는 경우 제출
11		유/무에 따라 구비	출생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 청력검사의 경우, 아기수첩에 결과지 부착된 경우 있음.
12			입·퇴원 요약지 및 입·퇴원 확인서	
13			아프가 점수(1분/5분)	
14			출생 후 황달, 경기, 발열 유무	
15			뇌/심장/복부 등 초음파 결과지(실시한 경우)	
16			특이사항이 있을 시 추가 검사결과 및 소견서 (황달, 혈액검사 등)	
17			아기수첩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18	아동 작성 서류	○	(원본)입양동의·승낙서	-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 -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신하여 승낙
19			(원본)아동 상담확인서	의사소통 불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20	친생부모 발급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 모두 필요함(단, 친생부 또는 모 일방의 동의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동의자의 서류만 제출)
2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입양동의서 작성
22			주민등록등본	- 친생부모가 수감 중인 경우 : 입양동의서에 친생부모의 서명 후 지장 날인 및 수감증명서 제출 - 친생부모가 군 입대자인 경우 :
23			(원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입양동의서에 친생부모 서명 후 지장 날인 * 위의 경우, 친생부모 상담을 진행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추후 가정법원의 보정 명령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을 친생 부모에게 안내
24			기본증명서(상세) (친생부모 미성년인 경우 해당)	
25	친생부모 작성서류	○	(원본)입양 동의·승낙서	※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일 경우 (입양동의일 현재 만 19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까지 동의서 작성
26			(원본)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원본)입양동의·승낙서 받은 경우 생략 가능
27			(원본)친생부모 상담확인서	
28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29	미성년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	○	(원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친생부모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 대리인,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까지 동의서 작성
30			미성년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1	시·군· 구 작성서류	○	아동카드	사진 첨부
32			아동 상담기록지	※ 아동이 언어발달 지연, 언어 장애 등의 경우 의견 청취 가능한 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 의사소통 불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3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 3회 이상 대면 필수
34			(원본)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35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입양대상아동 별도 분리하여 작성
36			육구조사표	
37			친부모 상황 점검표	
38			아동 상황 점검표	
39			개별보호 · 관리계획서	
40			일시 보호 의뢰서	※ 일시보호 시에만 작성
41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 원가정 보호 시 불필요
42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 가정위탁, 시설보호 시에만 작성(일시보호 시 포함)
43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소유물품)	
44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분기별)	시스템 입력, 결연 심의 전 현행화

※ ‘원본’ 표시한 서류는 입양 조치 결정 후 1주일 이내 시스템 업로드 후 원본 서류는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등기우편 송부하여야 함

☀ 유기아동 입양의뢰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1	아동 발급	○	아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아동 기본증명서(상세)			
3			아동 주민등록등·초본			
4	서류	유/무에 따라 구비	아동 전입신고서(전 세대주 서명/도장 必)			
5	아동 의료 관련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과지	- 검사와 관련한 영상 CD가 있는 경우 제출 - 청력검사의 경우, 아기수첩에 결과지 부착된 경우 있음.		
6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7			예방접종 확인 관련 서류			
8			청력 검사 결과지			
9			아동 혈액 검사 결과지 (혈액형,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포함)			
10		유/무에 따라 구비	출생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1			입·퇴원 요약지 및 입·퇴원 확인서			
12			아프가 점수(1분/5분)			
13			출생 후 황달, 경기, 발열 유무			
14			뇌/심장/복부 등 초음파 결과지(실시한 경우)			
15			특이사항이 있을 시 추가 검사결과, 소견서 (황달, 혈액검사 등)			
16			아기수첩			
17			○		(원본)입양 동의·승낙서	-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 -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신하여 승낙
18					(원본)아동 상담확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19	후견인	○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확인서	
20	발급서류		(원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21	후견인 작성서류	○	(원본)입양 동의·승낙서	
22			(원본)후견인 상담확인서	
23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24	시·군· 구 작성서류	○	아동카드	사진 첨부
25			아동 상담기록지	※ 아동이 언어발달 지연, 언어장애 등의 경우 의견 청취 가능한 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26			후견인 상담기록지	
27			(원본)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28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입양대상아동 별도 분리하여 작성
29			육구조사표	
30			아동 상황 점검표	
3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32			일시 보호 의뢰서	※ 일시보호 시에만 작성
33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 원가정 보호 시 불필요
34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 가정위탁, 시설보호 시에만 작성(일시보호 시 포함)
35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소유물품)	
36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보고서(분기별)	시스템 입력, 결연 심의 전 현행화
37			기타	유/무에 따라 구비

※ ‘원본’ 표시한 서류는 입양 조치 결정 후 1주일 이내 시스템 업로드 후 원본 서류는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등기우편 송부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 입양의뢰(주민등록번호 생성 후 입양 의뢰)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1	아동 발급	○	아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아동 기본증명서(상세)		
3			아동 주민등록등·초본		
4	서류	유/무에 따라 구비	아동 전입신고서(전 세대주 서명/도장 必)		
5	아동 의료 관련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과지	- 검사와 관련한 영상 CD가 있는 경우 제출 - 청력검사의 경우, 아기 수첩에 결과지 부착된 경우 있음	
6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결과지		
7			예방접종확인관련 서류		
8			청력검사 결과지		
9			혈액 검사 결과지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포함)		
10			유/무에 따라 구비		출생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1					입·퇴원 요약지 및 입·퇴원 확인서
12					아프가 점수(1분/5분)
13		출생 후 황달, 경기, 발열 유무			
14		뇌/심장/복부 등 초음파 결과지(실시한 경우)			
15		특이사항이 있을 시 추가 검사결과, 소견서 (황달, 혈액검사 등)			
16		아기수첩			
18		후견인 작성서류			○
19			후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 등 서류 있는 경우 생략)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20	시·군·구 작성서류	○	아동카드	사진 첨부
21			(원본)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22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입양대상아동 별도 분리하여 작성
23			육구조사표	
24			아동 상황 점검표	
25			개별보호·관리계획서	
26			일시 보호 의뢰서	※ 일시보호 시에만 작성
27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 원가정 보호 시 불필요
28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 가정위탁, 시설보호 시에만 작성(일시보호 시 포함)
29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소유물품)	
30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보고서(분기별)	시스템 입력, 결연 심의 전 현행화		

※ ‘원본’ 표시한 서류는 입양 조치 결정 후 1주일 이내 시스템 업로드 후 원본 서류는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등기우편 송부하여야 함

4 입양대상아동 보호 및 양육상황 점검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1 보호인프라 관리·운영

- ① 시·도는 입양과 관련된 담당 업무 현황과 절차별 시·군·구의 역할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함
- ② 시·도는 관할 시·군·구 내 입양대상아동 보호가 가능한 위탁가정, 시설 등 보호 인프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 가능 현황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관할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시설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 발생시 원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아동이 입양 완료시까지 보호·양육 가능한 위탁가정 및 시설로 아동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입양대상아동 보호

-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을 원가정 외에 가정위탁, 시설 등에서 보호해야 하는 경우, 보호되는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 소재지로 옮겨지며, 이때부터는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아동을 보호하게 됨

*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아동 보호 인프라 현황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시·군·구와 입양 완료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시·군·구가 달라질 수 있음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 아동이 시설 등에 보호된 시점부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후견인이 되도록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서식1)’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66, 3.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아동 보호 시 후견인 참고)
-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된 시·군·구에 사례이관(공문 송부)하고,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시설 등에 각종 급여·수당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 전입신고시 아동의 후견인이 아동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경우, ‘후견인 확인 사항 통보(서식 4)’ 공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송하거나, 미성년후견인 개시 (경질) 신고 완료 후 전입신고하여야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입양대상아동보호비**

- **지원 대상**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매월 1백만원 지급

※ 전문아동보호비와 중복 지급 불가

- (지원 기간)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입양대상아동 가정위탁 보호 결정일 또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에 따른 아동의 인도일이 포함된 달 부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입양대상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입양대상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원 조건)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예비 입양가정에서 아동양육상황 월별 기록지를 작성하여 아동 소재 시·군·구에 제출(매월)

- (지급 방법) 위탁·예비입양 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위탁부모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월 보호비를 지급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급 가능

※ 입양대상아동 생계급여,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기존 방식 지급(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아동수당 사업 안내 참고)

• 지원 절차

① (위탁가정) 지자체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입양 보호조치 및 입양 전 보호방안(가정위탁) 결정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지원절차와 동일하게, 가정위탁 책정 관련 서류를 근거로 가정위탁 부모에게 보호비 지급(매월 20일)

- ② (예비 입양가정) 지자체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협조 요청하여 아동을 예비 입양부모에게 인도
 - 위탁가정 변경 및 임시양육결정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비 입양부모에게 보호비 지급(매월 20일)

• 지원 기준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과 동일하게, 위탁보호 결정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급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가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한하여 변경 전 가정과 변경 후 가정 모두 지급
 - ※ (예시) 임시양육결정으로 위탁가정→예비 입양가정으로 변경, 위탁보호 중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다른 가정으로 변경 등(일반→전문 등 위탁가정 유형만 변경된 경우는 해당 없음)
 - ※ (참고) 위탁부모 A가 보호하던 아동 B가 7.5.에 입양허가로 보호 종료 후, 7.20.부터 아동 C를 새롭게 보호하였을 경우에는 월 1백만원만 지급
- 위탁 종료와 신규 위탁이 같은 월에 발생한 위탁가정에는 월 1백만원만 지급

※ (참고) **위탁부모 A가 보호하던 아동 B가 7.5일에 입양허가로 보호 종료 후, 7.20일부터 아동 C를 새롭게 보호하였을 경우에는 월 1백만원만 지급**

- 지자체 입양대상아동 결정 이전에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여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경우, 보호비 지급 가능(생계급여와 동일)
 - ※ (생계급여) 친생부모 입양 동의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에 일시보호 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급여 지급 가능
- 위탁가정 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아동은 1명 배치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 가정 내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에는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 (아동 1인당 100만원)

- 다만, '22.7.1 이전에 형제·자매가 아닌 아동을 2인 이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보호 종료시까지 아동 수와 비례하여 월 1백만원 지급
- '22.7.1 이후에 형제·자매가 아닌 아동 2인 이상을 신규 보호할 경우에는 보호비 전액 미지급
- * 다만, 기존 아동의 보호 종료일 이전에 신규 아동의 보호가 시작되어 두 아동의 보호 기간이 일시적으로 중복되는 경우(예: 15일 이내) 예외적으로 보호비 지급 가능

3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아동 보호 시 후견인

○ 후견인 선임의 원칙

- 입양대상아동이 입양 전까지 원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워 위탁가정, 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경우, 기존에 관계 법령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하거나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군·구청장의 후견 업무의 수행

- 위 원칙에 따른 후견인(아동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민법」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의 후견인 역할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음
- 단, 아동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경질 신고가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후견인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입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민법」 내 후견인의 직무 관련 주요 규정

•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신고가 있는 경우
-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
-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입양 전 보호기간 동안 후견인의 주요 역할 예시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료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아동보호 상황에 대한 확인 및 필요한 의사결정 등

-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 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하고 안내하여야 함
 - 친생부모가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제출받은 시·군·구는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
 - * 보호조치 결정 이후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친생부모는 입양 상담을 진행한 시·군·구를 통해 현재 아동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친생부모 상담 시·군·구는 친생부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후견인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아닌 경우, 통지신청서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후견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의 후견인 개시 및 변경(경질) 신고 절차
- 시·군·구청장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를 위해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서식1)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는 입양대상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서식29)의 사본과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서식3, 내부공문)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후)을 첨부하여 함
 - 후견인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후견인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되므로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후견인 개시 신고와 동일하게 입양대상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서식29)와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서식3)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후)을 첨부하여 함

[참고]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 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 작성 방법

- 미성년자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후견인 : 성명 대신 기관명(OO시장, OO군수, OO구청장)을 작성하고, 기관의 주소를 작성
* 주민등록번호 등 기관과 무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 후견감독인 : 미기재
- 신고인 : 성명 대신 직명(OO시장, OO군수, OO구청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실시(‘자격’란은 1 미성년후견인에 ‘○’ 표시)
- 개시일자 및 원인 : 입양대상아동을 인도 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입양대상아동의 인도’라는 문구(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작성
- 취임일자 및 원인 : 입양대상아동 인도일자를 작성하고, ‘3 법정’을 선택
- 심판일자 : 미기재
- 기타사항 : ‘「국내입양특별법」(약칭)에 따른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의 개시 신고’라는 문구를 기재
- 제출인 : 미성년후견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를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예시)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경질) 신고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인 개시(경질) 신고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 가족관계 등록실무 자료집(기재편) 제14의2절 미성년 후견 5-1란, 주3-1에 따라 직명만 기록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아동 주소지 변경 등으로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변경과 동일하게,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서식29)와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서식3)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 신고 후)을 첨부)

※ 입양대상아동 후견인 변경시 신고 절차

- (법원의 임시양육결정시)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므로, 예비양부모가 직접 '미성년후견 개시(경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또는 예비양부모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법원 결정문 첨부)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철회시)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철회한 때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친생부모가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후견인 종료 신고(입양동의철회서 첨부)

4 양육상황 점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진 후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양육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
2.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 환경
3.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 (원칙) 모든 입양대상아동에 대해 그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허가 전까지 해당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점검 보고서(서식32)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 보호 시 양육상황점검 주체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

- 아동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이후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등으로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시·군·구(후견인 역할 포함)는 달라질 수 있음

〈예시〉

- 친생부모 상담 의뢰를 통해 아동 주소지인 A 시·군·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 대상아동으로 결정하면서, 위탁가정이 있는 B 시·군·구에서 아동을 보호하기로 결정 : B 시·군·구에서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점검 실시(후견인도 B 시·군·구청장)
-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양부모 결연 후 법원에서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 아동은 예비 양부모 가정 주소지인 C 시·군·구로 전입 : C 시·군·구에서 양육상황점검 실시, 필요시 B 시·군·구에 협조 요청(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 발달 및 특별육구,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시설, 위탁가정*, 원가정 등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양육상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아동 양육상황 월별 기록지(서식31), 시설(시설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등으로부터 현황을 제출받아 참고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대상아동이 입양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양육상황점검 보고서(서식32)를 작성하여 시스템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은 결연심의를 위해 해당 양육상황점검보고서 항목별 작성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과 보완,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연 심의 진행 회의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시·군·구는 즉시 위탁가정, 시설 등에 해당 항목에 대해 확인 후 보완 (현행화)한 결과를 7일 내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

- 임시양육 기간 동안에는 아동(양부모) 주소지 시·군·구는 위탁기관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참고하여 가정방문(대면)을 통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여야 함
- ※ 5. 입양절차 진행 관련 단계별 협조 요청사항 (2) 임시양육결정 및 법원허가(p.83) 참고

○ 절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위탁센터, 시설, 위탁기간 등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 하여 아동의 상황을 파악(아동 주소지 시·군·구의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필요시 유선 상담)하여야 함
- 방문상담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인 경우, 시설담당자 등 보호자를 제외하고 독립된 장소, 또는 외부 장소(카페 등)에서 아동과의 단독·대면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상황(만족여부, 구성원 관계 등) 및 실제 욕구를 확인
- ※ 외부 상담 시,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활용
-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상태 및 발달상황, 양육환경, 양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양육상황점검보고서(서식32)의 항목별 상세 정보를 작성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시·군·구는 양육상황점검 결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보호 조치를 변경해야 함
- 시·군·구는 입양대상아동의 인수 시부터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보호 방법·장소, 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아동 신상의 변화(질병, 사망 등)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아동 주소지 관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① 시·군·구는 사망, 학대(의심 포함),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해 및 중질환 등 중대한 사항에 따른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서식33)에 따라 아동 주소지 관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 보건복지부에 보고
- ② 그 외 아동보호 방법·장소·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보고양식을 이용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도에 보고

5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이후에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친생부모(법정대리인)가 입양 동의 철회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는 법원에 임시양육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서(서식3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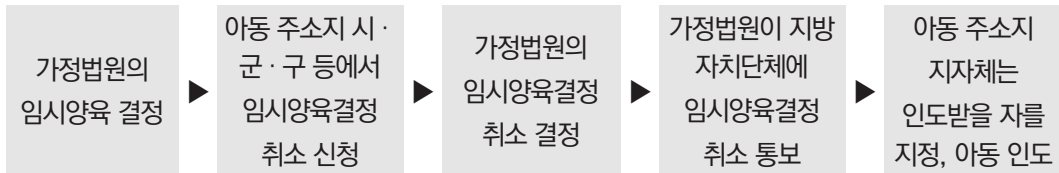
- 법원으로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서 제출 후 기각이 된 경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
-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현재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즉시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 인도하고, 후견인 변경을 신고하여야 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그림 1] 임시양육 결정 이후 임시양육결정 취소 절차



5 ▶ 입양절차 진행 관련 단계별 협조 요청사항

1 결연 등(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 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입양분과위원회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국내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국제입양분과위원회

- 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 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는 입양대상아동 결정과 관련하여 시·군·구에서 송부한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결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사무국에서 결연 심의자료 마련시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정보의 확인, 서류 보완,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2)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친생부모 및 아동 또는 상담·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및 시설, 친생부모 및 아동 등은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 아동의 입양과 관련한 자료·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3)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는 양부모가 될 자격 여부, 아동과 자격을 갖춘 양부모의 결연, 입양이 곤란한 아동, 국제입양대상아동 등을 결정함

① 입양이 곤란한 아동, 국제입양대상으로 결정한 아동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입양이 곤란한 아동 또는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경우, 사무국은 입양 심의 진행 경과, 결정 사유 등을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입양이 곤란한 아동)**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입양 진행 경과,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특성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등을 심의·결정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에게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확인하여 보호조치 변경 또는 유지(입양)를 검토하여야 함.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유지(입양)를 결정한 경우,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단, 입양 의뢰 시 제출 필요한 서류 현행화 필요)

- **(국제입양대상아동)**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입양 진행 경과,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친생부모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시설에 국제입양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하여야 함(국제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지속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조치 변경 등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국제입양절차 진행 관련 후견인 준비사항은 사무국이 개별 사례에 따라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안내 예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9조(보호조치) 시·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결연된 경우, 사무국에서는 입양 심의내용, 예비양부모의 기본정보(인적사항 등) 등을 포함하여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친생부모 또는 후견인 등)에게 결연 결과를 공유·논의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결연 결과 안내 및 수용 여부 확인시 결연 수용 의사 철회는 입양 허가 신청 전까지 가능함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1개월 이내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의 결연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서식34)를 작성하여 보장원으로 송부하여야 함
 - 예비양부모의 입양 허가 신청 전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수용 철회 의사가 확인될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사무국(아동권리보장원)과 소통 후 결연 수용 의사 철회서(서식35)를 즉시 송부하여야 함

4)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확정

- 사무국은 결연 수용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결연확인서 원본은 법원 제출 시 예비양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아동-예비양부모 만남 지원

- 사무국에서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결연이 확정된 이후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만남을 위해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결연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고 만남 등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임시양육을 진행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이후 (예비)양부모와 아동 만남 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이 예비양부모와 만남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일정 조정 등 적극 협조하고, 만남 후 관련 정보(일시·장소, 참석자, 담당자 의견 등)를 관리하여야 함(시스템 입력)

2 임시양육결정 및 법원허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24조

- **제22조(임시양육결정)** ①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입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 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입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입시후견인이 된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시양육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입시양육결정을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시양육결정의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입시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입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입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입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입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입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

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①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13조

-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아동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양육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임시양육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임시양육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임시양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4. 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임시양육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임시양육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1) 입양허가 신청 및 심의

-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 보호를 원하는 경우 임시양육결정을 같이 신청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관련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함(예 : 사실조회 요청시 의견서 제출 등 기한 필수 엄수)

2) 아동인도(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시)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을 (예비)양부모에게 직접 인도 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서식39, 소유물품 리스트) 및 소유 물품을 같이 인도하고, 인도확인서(서식38)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예비)양부모에게 전입신고, 급여신청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 ※ 임시양육결정시 예비양부모는 후견인 변경 신고 후 아동을 본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때 아동의 주소지는 입양가정의 시·군·구로 변경됨
- 임시양육결정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아동(양부모) 주소지 시·군·구는 임시양육 기간 동안 위탁기관이 작성한 아동적응 보고서를 참고하여 가정방문(대면)을 통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입양대상 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서식32)를 작성해야 함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아동 권리보장원)에 보고 필요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예비양부모가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제입양에서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국외 양부모에게 아동과 아동에 관한 기록(서식39, 소유물품 리스트) 및 소유물품을 같이 인도하고, 인도확인서(서식 38)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사무국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 및 국외 양부모와 소통하여 아동 인도 일정을 조율 하고, 아동 인도 시 동행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 입양아동 인도 시 고려할 사항

- 아동의 인도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할 때 인도하여야 함
-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단,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동의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특히,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친생부모와 (예비)양부모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여 가급적 직접 만나지 않고 담당 직원을 통해 인도하도록 하여야 함. 친생부모와 (예비)양부모 간에 원하지 않는 만남,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부터 아동을 실제로 보호했던 위탁가정·시설을 통해 아동의 음식, 잠자리 습관, 대소변상태, 신체의 약한 부위, 병력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자세하게 제공하여야 함
 - 친생부모, 위탁부모 등 애착을 형성하였던 양육자와 분리를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수 있음

- (예비)양부모가정으로 가는 첫날은 새로운 환경임을 감안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바람직 하며, 아동이 가정에 적응할 때까지 양육을 도와줄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친인척, 친구 등의 축하방문은 자제하도록 함

3) 임시양육결정 취소

-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도 및 시·군·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임시양육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사유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시양육 취소 결정의 통지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 예비양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예비양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의 결정 사유(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친생부모·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승낙 철회 등)를 확인하고, 사무국과 협의하여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임시양육결정 취소시 아동의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 ※ 임시양육결정시에는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됨

- 예비양부모가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됨
-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 입양허가 기각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친생부모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시설에 안내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의 결정 사유(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친생부모·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승낙 철회 등)를 확인하고, 사무국과 협의하여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입양허가 완료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인용 결정 통지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예비양부모에게 친양자입양 및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 친양자입양신고서(서식4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26조

- **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보호조치 종결, 사례이관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신고 여부 확인하여 입양성립에 따른 보호조치를 종결함(종결일자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일자(친양자 입양신고))
 -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법원 결정사항 단순 보고) 후, 아동 주소지 시·군·구 (입양가정 주소지로 전입 완료)로 사례이관하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공문 송부
- 새로운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이관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양부모에게 각종 급여·수당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3 입양 후 적응지원

1) 위탁기관의 아동적응보고서 모니터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위탁기관은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총6회, 대면)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여 아동적응보고서(서식46)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위탁기관이 작성한 아동적응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양가정 적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유선·대면 상담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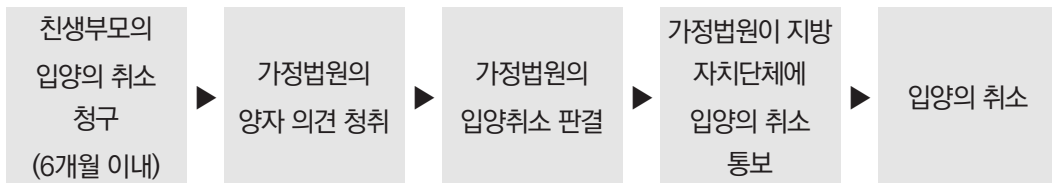
2) 서비스 연계·지원

-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위탁기관의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을 위한 서비스(양육정보 제공·상담, 심리지원, 자조모임 등)를 직접 지원하거나 연계하여야 함

6 ▶ 입양의 취소

-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양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동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행 등 협조 필요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아동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함
-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입양취소신고(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서식42))

[그림 2] 입양취소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입양의 취소) ①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 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 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7 ▶ 입양가정 지원사항(양육보조금 등)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됨 (사업명 : 입양아동 가족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17조

•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2. 의료비 :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 ②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2.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 ④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절차를 거쳐 국내 입양한 가정에는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 의료비 및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원칙 및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 지원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
- 관계공무원은 양부모의 양육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 양부모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입양비용 지급

※ 입양기관 간접지원방식의 국내입양 가정 입양비용 지원은 '25년도말까지 정산 가능

- 지급대상
 -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절차를 진행한 국내 입양한 가정
 - * 구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은 지원대상 아님
 - '25.7.19. 이후에는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이 제도 개편 이전부터 보호중인 입양대상아동과 입양기관에서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예비양부모가 '25년 내 결연위원회(입양정책위원회 포함)에서 결연되어 법원허가 신청을 하면 입양비용 청구 및 지급 가능(공동알선비용도 동일하게 적용)

○ 지원내용

① 입양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25.7.19.이후에는 입양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원에 입양 허가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라면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40)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 (정산기한) '25년 말까지 입양알선비용 청구 및 지급 가능
- (청구서류)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40), 입양허가신청 접수증(사본) 또는 입양 비용 청구기관 확인 공문(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기관으로 통보)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 하여 선택
- (지 급)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 지급 기관(예시) : 서울거주 입양부모가 홀트 부산지부에서 입양 시 서울시에서 지급 부산거주 입양부모가 대한 서울본사에서 입양 시 부산시에서 지급

② 공동알선*비용 지원

* 정의 : 국내입양 추진 중 기관 내 결연위원회(입양정책위원회 포함)에 일정기간 상정되었으나 예비양부모와 결연되지 못하여 입양기관 간 공동으로 결연을 추진한 경우(A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B 입양기관에서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양부모가 결연되어 입양허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 **(지원내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하되, 공동알선을 추진하는 양 기관에 각 50%씩 지원
- **(지원방법)** '25.7.19.이후에는 입양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원에 입양 허가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라면 공동알선비용 청구 가능, 공동으로 해당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40)를 작성하여 공동알선비용(입양알선비용의 50%) 일괄 청구
- **(정산기한)** '25년 말까지 공동알선비용 청구 및 지급 가능
- **(청구서류)**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40), 입양허가신청 접수증(사본) 또는 입양 비용 청구기관 확인 공문(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기관으로 통보)

③ 입양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지원방법)**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40)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정산기한)** '25.7.19.이후 입양기관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친생부모 등이 입양 동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25년도 말까지 입양철회비용 청구 및 지급 가능
- **(청구서류)**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40), 입양동의서 및 입양동의 철회서 각 1부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 하여 선택
- **(지 급)**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지급 기관(예시) : 서울거주 친생부모가 홀트 부산지부에서 진행 중인 입양에 대해 철회 시 부산시에서 지급, 부산거주 친생부모가 대한 서울본사에서 진행 중인 입양에 대해 철회 시 서울시에서 지급

[표 4] 철회비용 산정 기준

아동 보호기간	~ 2주 미만	2주 이상 ~ 4주 미만	4주 이상 ~ 6주 미만	6주 이상 ~ 8주 미만	8주 이상 ~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 행정사항

- 구「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부칙 경과 규정(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부칙 제7조에 따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입양기관의 허가 유지
- 구「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아동과 입양기관에서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예비양부모가 '25.12.31.까지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산방법을 정산기한까지 별도 안내 예정

3 입양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급방법
 -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 통장사본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함

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법 제32조 등)

○ 지급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

- 「민법」에 따른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국내에서 국외로 입양, 아동의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입양)은 지급대상이 아님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된 경우는 지급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이며,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복수국적도 해당)을 국내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입양아동이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 중지하고, 해당 월까지 지급
 -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이후 재신청 가능
- 입양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 * 보호조치되는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까지 지급, 15일 이전인 경우 전월까지 지급
보호조치가 해제되어 입양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하는 월부터 지급 재개
- 입양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하여 입양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증명서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 말소일(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급여 지급
 - * 가족관계업무 담당부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양특례법상 파양, 입양의 취소에 관한 판결의 확정 또는 심판의 효력 발생 내용을 입양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입양업무 및 아동 보호 담당부서)에 공유
- 입양아동이 행방불명(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 경찰서 등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 경과,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단, 국내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일시적 해외 체류 중인 경우로서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월부터 지급 정지
 - *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달까지 지급 정지하되, 정지 기간의 급여는 소급지급 하지 않음.
 -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월부터 지급 정지하되, 제외 사유(국내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거나, 일시적 해외 체류 중인 경우로서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정지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급지급 가능(양부모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고,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 재개 가능)
- 지급방법
 - 매달 20일, 20만원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 통장사본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하고,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함

5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아동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 입양 당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 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임을 인정하는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 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

- 「민법」에 따른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국내에서 국외로 입양, 아동의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입양)은 지급대상이 아님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된 경우는 지급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이며,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복수국적도 해당)을 국내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장애아동이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 중지하고, 해당 월까지 지급
 -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이후 재신청 가능
- 장애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급여 지급
- 장애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 * 보호조치되는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까지 지급, 15일 이전인 경우 전월까지 지급
보호조치가 해제되어 입양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하는 월부터 지급 재개
- 장애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하고, 입양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하는 월부터 지급 재개

-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하여 장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증명서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 말소일(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급여 지급

* 가족관계업무 담당부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양특례법상 파양, 입양의 취소에 관한 판결의 확정 또는 심판의 효력 발생 내용을 입양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입양업무 및 아동 보호 담당부서)에 공유

- 장애아동이 행방불명(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 경찰서 등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 경과,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단, 국내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일시적 국외 체류 중인 경우로서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월부터 지급 정지

*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달까지 지급 정지하되, 정지 기간의 급여는 소급지급 하지 않음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월부터 지급 정지하되, 제외 사유(국내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거나, 일시적 국외 체류중인 경우로서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정지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급지급 가능(양부모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고,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 재개 가능)

○ 지급범위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매월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매월 634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비급여대상 제외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 장애인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품목(p.415),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구 급여사업 품목(p.480) 참고
 - 장애아동 의료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등) 제출 필요
 - 장애인의료비 지급 시 의료급여 사후지원방식인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 부담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행복이음으로 통보한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을 근거로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을 산정할 것
- 지급방법 : 매달 20일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 통장사본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하고,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함
 - ※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 후 지급 결정
 - ※ 장애등록을 하지 아니한 아동(입양 당시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 및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 대하여는 장애·질환이 지속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

※ 지원대상, 지급 제외 및 중단사유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일

○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 지원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서식43)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담당 공무원은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 희망자에게 2가지 적용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증빙서류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며, 전·출입 시 시·군·구간에 서류를 이송할 필요는 없음

○ 적용방식

- 다음의 2가지 방식 중 입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 사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08.2.1일부터 시행)
 - 사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사후 환급('08.3.1일부터 시행)
-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 양부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증으로 발급 가능

[표 5]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방식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표기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 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 행정처리 절차

- 의료급여 자격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사실 증명서류(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의료급여 적용신청(사후지원 또는 사전지원 방식 선택)
 - 시·군·구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를 건강보험 공단에 전송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사후지원 방식은 수급권자 미표기, 사전지원 방식은 수급권자 표기)
- 본인부담금 환급절차(사후지원 방식 선택자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은 분기별로 해당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을 발취하여 시·군·구와 상호정산하고, 본인부담금 환급 내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 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
 - ※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확인가능
- 각 시·군·구에서는 해당 소재 의료기관에 입양아동의 건강보험증 기재방식 및 의료 급여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입양아동이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 시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IV

입양정보 공개청구제도



1. 개요
2. 입양정보공개청구 이후 가족찾기 지원

IV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1 개요

1 법적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20조

2 목적

- 입양 배경 등 정보제공을 통한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지원

3 신청 자격

- 「고아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입양특례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
 - 만 19세 이상 : 입양인이 직접 입양정보공개청구 가능
 - 만 19세 미만 : 입양부모의 동의하에 입양정보공개청구 가능

4 신청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5 신청 방법 및 서류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말로 청구 가능
 -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필요
 -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우편·팩스보다는 정보통신망(입양정보공개신청 사이트 : www.kadoption.or.kr)을 통해 신청 권장
-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양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료적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등 제출 필요

6 청구 대상 입양 정보

- 입양인의 입양배경 (친생부모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불필요)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거주지역(「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입양의 배경에 관한 사항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등 출생에 관한 사항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시설 및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친생부모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필요)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자우편 주소를 포함)

7 처리 기한(기간 산정 시 공휴일과 토요일 미포함)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입양정보 공개 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서식)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

※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 또는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① 친생부모 인적사항 이외의 사항(입양 배경정보)에 대한 정보만을 청구한 경우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②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이 경우, 15일 이내에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통보

8 입양정보공개 처리 절차

- 친생부모 인적사항 이외의 사항(입양 배경정보)에 대한 정보만을 청구한 경우 : 입양 정보공개청구 접수 → 입양인 정보 조회 및 기록물 확인 → 기록물 디지털 사본 비식별화 처리 → 결과 통지 및 정보 공개
 -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 → 입양인 정보 조회 및 기록물 확인 → 친생부모의 현재 소재지 파악 → 친생부모로부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 → 동의 결과에 따라 기록물 디지털 사본 비식별화 처리 → 결과 통지 및 정보 공개
- ※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는 친생부모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1차) 또는 지자체 협조 요청(2차)을 통해 현재 주소지 등 확인 절차 진행

2 ▶ 입양정보공개청구 이후 가족 찾기 지원

- 입양기록물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없거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 또는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무연고 입양인으로 보고 언론매체를 통한 친생가족 찾기 사연 홍보,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정보 등록을 지원
- 유전자 정보 등록은 입양정보공개청구 진행 후 무연고 입양인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경찰서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유전자 채취 및 등록 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2.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3.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등
4.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5.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V

부록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5.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7.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8.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p>		
<p>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p>⑤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상호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하에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 입양아동 본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8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2장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p>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p>	<p>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아동, 입양 후 성인이 된 사람, 양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지원방안 2. 입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p>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p>	
<p>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p>	<p>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2.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제도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입양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계 행정 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관계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p> <p>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입양분과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내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국제입양분과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입양 대상아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p>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의 제출 및</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 사무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p>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p>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p> <p>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p>		<p>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구청장은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와 제15조제2항 각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 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u></p>		<p>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진 후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u>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p>		<p>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p> <p>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양육상황을 점검해야 한다.</p> <p>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 2.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 환경 3.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자가</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될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p>
<p>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p> <p>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하거나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p> <p>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임시양육 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에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p>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p>③ 제2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 까지 철회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p>		<p>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승낙서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동의·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p> <p>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p> <p>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시·도지사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후견인(친생부모는 제외한다)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에 따른 입양절차에 관한 사항 2.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5.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p>④ 시·도지사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시·도지사등은 친생부모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p>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p>		
<p>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u></p> <p>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p>	<p>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p>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p>
<p>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u></p> <p>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지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말한다.</p>
<p>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u></p>		<p>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19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해야 한다.</p>
<p>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p> <p>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p>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임시양육결정) ①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p> <p>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p> <p>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을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양육결정의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임시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p> <p>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② 제1항의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p>	<p>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p> <p>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p> <p>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 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p>		
<p>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p> <p>①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시양육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임시양육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임시양육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임시양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임시양육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임시양육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p>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 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p>		
<p>제28조(입양의 취소) ①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p>		
<p>제29조(보호조치) 시·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p>		
<p>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 및 제2항의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		
<p>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p>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p> <p>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2.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p> <p>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수당 :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2. 의료비 :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 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p>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p>	<p>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p> <p>① 제14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p>	<p>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p> <p>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2.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p>
	<p>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p> <p>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p>	<p>④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p>	
	<p>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p>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p>	<p>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2.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3.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등 4.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 특별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p> <p>5.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p>	
	<p>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p> <p>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p>	<p>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p> <p>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2. 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만, 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p>	<p>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p>	
	<p>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이 제18조제1호에 따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 15일 이내 2. 청구인이 제18조제1호에 따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 45일 이내 	<p>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p> <p>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1. 비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p> <p>2. 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 출력물의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p>	
제5장 보칙		
<p>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③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p> <p>1.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정보</p> <p>2.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p> <p>3.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p> <p>4. 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p> <p>5.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p> <p>6.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p> <p>7.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결정 등에 관한 정보</p> <p>8.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p> <p>9.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p> <p>10.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p> <p>11.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p> <p>② 시·도지사등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p> <p>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p> <p>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p> <p>3. 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p> <p>4.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p> <p>5.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p> <p>6.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p> <p>7.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p> <p>8.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p> <p>9.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p> <p>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한다.</p> <p>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p> <p>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양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p> <p>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p> <p>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p> <p>5.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등에 관한 정보</p> <p>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p>⑤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등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p>		
<p>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 보고서 작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 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8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p>제22조(경비의 보조) 법 제3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업무 3. 그 밖에 입양 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p>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6.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 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p> <p>7.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p> <p>8.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관리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p> <p>1.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p> <p>2.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p> <p>3.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p> <p>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p> <p>5.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 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p> <p>6.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p> <p>7.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p> <p>8.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p> <p>9.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관리에 관한 사무</p> <p>11.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5.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지원 사무 <p>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장 벌칙		
<p>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36조 본문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p>② 임시양육결정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별표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 가.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상담실)과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 2) 녹음기, 카메라 등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
- 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2. 인력기준

- 가. 배치기준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상근직 전담인력 6명 이상을 위탁업무에 배치할 것
- 나. 자격기준 :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력, 경력 또는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
- 1) 팀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담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3 제3호나목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마)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별표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서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	
1) 인도를 요청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도한 경우		200
2) 인도를 요청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나 1개월 이내에 인도한 경우		500
3) 인도를 요청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을 지나 인도하거나 인도하지 않은 경우		1,000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11호, 2025. 5. 30., 전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2장 입양허가 청구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 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보를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보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시양육결정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장 입양취소의 소

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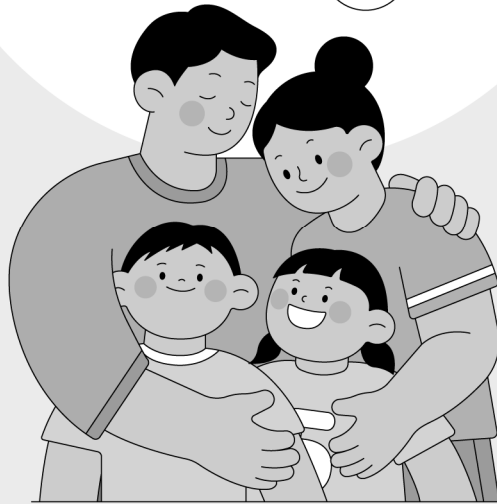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부칙 <제3211호, 2025. 5. 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VI

서식



☀ 서식 목록

번호	절차 단계	서식 구분	서식명	작성주체	비고
1	상담 ~ 입양 조치 결정 전	행정서식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	지자체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서식 제29호
2		행정서식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	지자체	
3		행정서식	신규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	지자체	
4		행정서식	신규입양대상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지자체	
5		행정서식	육구조사표	지자체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4
6		행정서식	친부모 상황 점검표	지자체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8
7		행정서식	아동 상황 점검표	지자체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9
8		행정서식	개별보호 · 관리계획서	지자체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11
9		행정서식	변경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지자체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8-4 일부 수정
10		행정서식	변경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지자체	2024년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7 일부 수정
11		행정서식	변경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2024년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8 일부 수정
12		행정서식	후견인 상담기록지	지자체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7-1
13		행정서식	변경후견인 상담확인서	후견인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8-2 일부 수정
14		행정서식	신규아동 상담기록지	지자체	
15		행정서식	신규아동 상담확인서	아동	
16		행정서식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8-3
17		법정서식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일시 보호 의뢰서	지자체	

번호	절차 단계	서식 구분	서식명	작성주체	비고
18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변경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친생부모	
19	입양 조치 결정 ~ 입양 정책위 심의 전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변경입양 동의·승낙서	아동/ 친생부모/ 후견인	
20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변경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아동/ 친생부모/ 후견인	
21		행정서식	가정 복귀 점검표	지자체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17
22		행정서식	변경친생부(모) 입양동의서 미첨부 사유서	친생부(모) /지자체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8-1 일부 수정
23		법정서식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아동카드	지자체	
24		행정서식	변경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지자체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23 일부 수정
25		행정서식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지자체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25
26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변경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지자체	
27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신규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친생부모	
28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신규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지자체	
29		행정서식	신규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지자체	
30	행정서식	신규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지자체		
31	행정서식	변경아동 양육상황 월별 기록지	위탁가정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13-2 일부 수정	

번호	절차 단계	서식 구분	서식명	작성주체	비고
32		행정서식	변경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지자체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13-3 일부 수정
33		행정서식	변경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지자체	2024년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13 일부 수정
34	입양 정책위 심의· 의결 후 ~ 아동 인도	행정서식	신규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	법정대리인 /양부모	
35		행정서식	신규결연 수용 의사 철회서	법정대리인 /양부모	
36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신규결연확인서	보장원	
37		행정서식	신규입양양육결정 취소 신청서(지자체)	지자체	
38		행정서식	변경입양아동 인도 확인서	양부모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10 일부 수정
39		행정서식	변경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보호시설/ 지자체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12 일부 수정
40		행정서식	변경입양비용 지급신청서	입양기관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29-1 일부 수정
41	기타	행정서식	변경친양자입양신고서	양부모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4 일부 수정
42		행정서식	변경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양부모	2024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6 일부 수정
43		행정서식	변경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양부모	
44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변경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양부모	
45		법정서식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신규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결정 통지서	지자체	
46		행정서식	변경아동적응보고서	위탁기관	

서식 1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

**미성년^①후견^②후견감독
개시 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영)	한자 (성 /영)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 명	한글 (성 /영)	한자 (성 /영)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③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영)	한자 (성 /영)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④ 신고인	성 명	(성 /영)	④ 또는 서명	전 화	
	자 격	①미성년후견인 ②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③미성년후견감독인			이 메 일
⑥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⑥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①지정 ②선정 ③법정			
⑦심판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⑧기타 사항					
⑨제출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란: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⑥란: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⑦란: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⑧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PART VI

서식 2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

미성년^①후견인^②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영)	한자	(성 /영)	주 민 등 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사)	성 명	한글	(성 /영)	한자	(성 /영)	주 민 등 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③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영)	한자	(성 /영)	주 민 등 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④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							
④ 신고인	성 명	(성 /영)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자 격	① 후임후견인 ② 후임후견감독인					이 메 일
⑥경질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⑦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⑧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⑨기타 사항							
⑩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란: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 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 -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 -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식 3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 (신규)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

행정기관명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양대상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바, 해당 아동의 미성년후견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명	위탁일자	인도인 (소속, 성명)

붙임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1부. 끝.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4 입양대상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신규)

행정 기관 명

수신 00 읍면동 주민센터장
(경유)

제목 **입양대상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위탁하여 보호하게 된 입양대상아동의 전입 신고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후견인 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입양대상아동 성명	성 별	생 년 월 일	확 인 내 용		후 견 인	비 고
			전 거주지	현 거주지 (이사하는 곳)		
					예) ○○시장	

※ 위 통보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정대리인 확인사항을 갈음함

- 붙임 1.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사본 1부
- 2.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 사본 1부. 끝.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기간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 욕구조사표

욕 구 조 사 표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차수()차					
주 소						휴대전화									
주거사항	주거 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연립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무허가, 움막, 비닐하우스 <input type="checkbox"/> 여관, 고시원, 쪽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주 :) <input type="checkbox"/> 전세(전세금 만원) <input type="checkbox"/> 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input type="checkbox"/> 무상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옥 구조	<input type="checkbox"/> 방 ()개 <input type="checkbox"/> 거실 ()개 <input type="checkbox"/> 주방 ()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개 <input type="checkbox"/> 욕실 ()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욕실 겸용		난방 방법	<input type="checkbox"/> 가스·기름보일러 <input type="checkbox"/> 연탄·화목보일러 <input type="checkbox"/> 전기매트·전기온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공용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input type="checkbox"/> 분체 <input type="checkbox"/> 별채	
	주거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노후 <input type="checkbox"/> 긴급보수필요 <input type="checkbox"/> 폭염취약 <input type="checkbox"/> 한파취약 <input type="checkbox"/> 환기부적절 <input type="checkbox"/> 채광부족 <input type="checkbox"/> 협소한공간 <input type="checkbox"/> 약취/불결													
	주거환경	<input type="checkbox"/> 소음 <input type="checkbox"/> 유흥가 <input type="checkbox"/> 대로변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사계획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거주기간	년 개월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중심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미혼모부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가족사항	관계	성명	주민번호	연령	성별	동거여부	결혼상태	학력	직업	장애	질병	연락처			
	▶ 구성원 세부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주소		실거주주소				
	성별		학력		학교명/학년		
	직업		월평균 소득		생활수준		
	결혼여부		기혼/미혼 사유		근로능력유무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유형		질병종류				
	비고						
대상아동	등록기준지						
	가정환경 (성장과정)						
서비스이력	수혜자	개시일~종료일	급여·서비스명	서비스유형	제공주기	제공기관	서비스상태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0 안전	①가족내 안전유지	폭력							1. 정신질환 2. 음주문제 3. 약물 오남용 4. 폭력적 성향 5. 왜곡된 성의식 6. 치매 7. 무기력감 8. 성격차이 9. 무관심/의지없음 10.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11. 가족내차별 12. 가족구성원 간 갈등 13. 가정해체 14. 경제적 빈곤 15. 종교문제 16. 이유 없음	
		성추행/성폭력								
		유기								
		방임								
		학대								
		실종								
	②가족외부로부터 의 안전 유지	폭력							1. 자기보호능력미약(정신지체 등) 2. 피임/약용 3. 친인척 간 불화 4. 타인과 불화 5. 원한관계 6. 부채/금전거래	
		성폭력								
		협박·위협								
		학대								
착취										
1 건강	①신체적 건강유지	신체장애						1. 유전적(선천적)원인 2. 사고 3. 자해 4. 방임 5. 학대 6. 신체 질병 및 질환 7. 스트레스 8. 잘못된 식습관 9. 운동 부족 10. 질병에 노출된 환경 11. 경제적 빈곤 12. 적절한 치료 부재 13. 정보 부족 14. 치료 기피 15. 원인 미상		
		일시적 질병 및 상해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비만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②정신적 건강유지	영양결핍									
	환청/환각/망상								1. 음주문제(주정, 알콜중독 등) 2. 약물 오남용·중독 3. 스트레스 4. 정신분열증 5. 우울증 6. 신경증(공황장애·PTSD) 7. 기타 정신질환 의심 8. 치매 9. 성격장애 10. ADHD 11. 불안감 12. 이성문제 13.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 및 중독	
	자해(자살)행위									
	약물오남용·중독									
	식사거부									
	수면문제									
	음주문제 (주정·과도한 음주·알콜중독)									
	공격적 행동 (싸움걸기·반복적 민원제기·폭력행동)									
	대인기피									
	은둔/칩거									
	의사소통장애									
	위생관리문제									
	이상한 행동									
	불안감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2 일상 생활 유지	①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식사 및 준비 곤란							1. 신체질병/장애 2. 정신질환 3. 지적장애 4. 신체허약/노환 5. 무기력감/의지없음 6. 교육 학습 부족 7. 상해 8. 보호자의 부재(가출 및 사망 등)		
		의복착용 곤란									
		외출 곤란									
		약물복용 곤란									
		위생관리 곤란 (용변처리 등)									
		긴급상황 대처 곤란									
	②여가생활 활용	여가활동 부족							1. 시간 부족 2. 정보 부족 3. 경제적 빈곤 4. 적절한 치료 부재 5. 가족의 무관심 6. 주변의 괴임 7. 무기력감/의지없음 8. 여가시설 부족		
		부적절한 여가활동 (게임 도박 등)									
	3 가족 관계	①관계형성	부부갈등						1. 실업 2. 폭력 3. 탈선 및 가출 4. 성격차이 5. 배우자 외도 6. 자녀양육 갈등 7. 종교 갈등 8. 가족부양부담 9. 다문화가구 10. 시간부족 11. 보호역할 가구원 부재	12. 가족 내 차별 13. 학업성적 부진 14. 자녀 이성문제 15. 교육관계 16. 재산상속 갈등 17. 금전거래 18. 경제적 빈곤 19. 정보부족 20. 무관심 21. 장애 22. 질병	
			부모자녀 갈등								
			고부갈등								
			형제(자매)갈등								
가족간 관계소원											
가족간 관계단절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②가족돌봄	가족간 갈등									
	장애인돌봄 곤란									
	노인돌봄 곤란									
	아동돌봄 곤란									
	환자돌봄 곤란									
4 사회적 관계	①친인척 및 이웃간 관계형성	친인척과 갈등							1. 친인척 부양부담 2. 대인기피 3. 소란 위협 4. 금전거래 5. 위험물 방치 6. 쓰레기 방치 7. 정신질환 8. 음주문제 9. 지역개발 10. 종교갈등	
		친인척 관계소원								
		친인척 관계단절								
		이웃간 갈등								
		이웃간 관계소원								
	이웃간 관계단절									
	②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려움							1. 정신질환 2. 지적장애 3. 대인기피 4. 적응력 부족 5. 지원 거부 6. 따돌림 7. 폭력 8. 성폭력 9. 상습범죄 10. 학업수행 부진 11. 탈선 및 가출 12. 경제적 빈곤 13.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14. 시간 없음	
학교생활 어려움										
종교생활 어려움										
기타 사회생활의 어려움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5 경제	①기초생활 해결	식비 부족							1. 실직/휴폐업 2. 파산 3. 신용불량 4. 사고 및 화재 5. 일시적 질병 및 상해 6. 중한 질병 7. 건강보험 미가입 8. 정보 부족 9. 저임금/수입 10.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11. 근로능력자 부재 (사망/기출/실종)	
		주거비 부족								
		의복비 부족								
		난방비 부족								
		공과금 체납								
		통신비 부족								
		의료비 부족								
	②자산관리	자산관리 능력부재							1. 지적장애 2. 치매 3. 정신질환 4. 음주문제 5. 습관성 도박 6. 보호자 부재 (소년소녀가정) 7. 근로능력자 부재 8. 실직/휴폐업 9. 파산 10. 신용불량 11. 사고 12. 의료비과다 13. 교육 학습 부족 14. 타인에 의한 세금체납 (명의도용 등)	
		부채								
		과태료·벌금								
		과소비·낭비								
	6 교육	①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읽기·쓰기·말하기 문제						1. 언어능력 부족 2. 신체적·정신적 장애 3. 학습능력 부족 4. 학습의지 부족 5. 학습지도자의 부재 6. 보호자의 무관심/인지부족	
			수리계산 능력 부족							
			그 외 기초 학습능력 부족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②교육환경 개선	수업료·급식비 등 부족								1. 경제적 빈곤 2. 교육환경 지원자의 부재 3. 가족부양부담 4. 보호자의 인식/무관심/의지부족 5. 이성문제 및 교우관계 6. 탈선 및 가출 7. 본인의 무관심/의지부족 8. 정보부족	
	특수교육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무단결석									
	학업성적 부진									
7 고용	①취(창)업	실업·실직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2. 부채 3. 가족 간병부담 4. 자녀 양육부담 5. 조직생활 부적응 6. 따돌림 7. 경험 및 경력 부족 8. 직업기술/훈련 부족 9. 저학력 10. 교통문제 11. 자금부족 12. 정보부족 13. 복지서비스 의존 14. 잦은 실패경험 15. 낮은 자존감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17. 신체적 장애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비정규직								
		구직의 어려움								
		창업의 어려움								
		기술교육의 필요								
		취업동기 부족								
	②고용유지	잦은 직장 이동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2. 부채 3. 가족 간병부담 4. 자녀 양육부담 5. 조직생활 부적응 10. 교통문제 11. 자금부족 12. 정보부족 13. 복지서비스 의존 14. 잦은 실패경험		
반복적인 재취업/창업 실패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상태에 익숙해짐 취업동기 부족 사업체 유지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따돌림 7. 경험 및 경력 부족 8. 직업기술/훈련 부족 9. 저학력 15. 낮은 자존감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17. 신체적 장애 		
8 생활 환경	①주거내부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부족 2. 시설낙후 3. 시설위험 4. 시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등) 5. 쓰레기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열악 주방시설 열악 위생환경 열악 도배·장판 열악 냉난방 열악 전기/가스 시설 열악 상하수도 시설 열악 지붕노후(누수 등) 벽/담 등 노후 주택 내 이동 곤란 사생활 공간 부족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②주거외부 환경개선	학습환경 열악								1. 도서산간지역 2. 유흥업소 밀집지역 3. 공장 밀집지역 4. 자연재해 다발 지역 5. 우범지역 6. 편의/기반시설 낙후·부재 7. 위험물 방치 8. 쓰레기 방치 9. 정보 부족 10. 도시계획 (강제철거·퇴거)	
	교통접근성 열악									
	상습침수									
	철거 등 공공수용									
	거주지 이전									
	화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생활환경 열악									
9 법률 및 권익 보장	①법률적 지원	법률처리(재산/위자료 등) 문제						1. 법률지식 및 정보 부족 2. 법적후견인 부재 (장애·미성년 등) 3. 폭력/범죄 4. 이혼 5. 사고(의료·산재·교통사고 등) 6. 결혼이민/이주/난민/탈북 7. 주민등록 말소 8. 경제적 능력 부족		
		신분상실								
		사고보상 처리								
		파산/신용불량								
		국적문제								
	②권익보장	차별대우						1. 고용기회 차별 2. 관련 법률조항의 문제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권리침해								
10 기타	기타									

주요요구	우선순위	요구명	요구내용	
종합의견			요청 서비스 내역	
사회적 지지자원			첨부파일	
관리번호			소 속	
연 락 처			담당자	

친부모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활용

*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불분명함	
가정 환경	1 부모는 동거중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3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직업 : 근로시간 : (모) 직업 : 근로시간 :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소득 : 평균 만원
	5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채 : 만원
	6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전세 (보증금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질병 또는 장애유형: (모) 질병 또는 장애유형:
	8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 종류 : 치료여부: (모) 종류 : 치료여부:

번호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주변 환경	9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종류 : 이용기간: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1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양육 태도	12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대 등 내용 :
	13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불충분 시 필요한 돌봄 내용 :
	14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예	아니오	불분명함	
16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친한친구: 좋아하는 음식: 반 / 번호:	
보호 조치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 희망자 : (예) 부모 모두 희망, 부모 중 1인 희망 (부 또는 모) • 희망보호형태 :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시설보호(그룹홈, 양육시설, 입양 등
관련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기간 : , 보호형태 :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만남 주기 :

번호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20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가 부모 본인이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주양육자: 사유 :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개월 이다.				개월
소견					

- 부모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경우, 원가정 유지를 위하여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하도록 조치
-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능력 및 의지가 없는 경우,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고, 부모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아동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상황 점검표 활용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구분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정신 건강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성장발달 지연, 제한된 신체기능, 인지영역 문제, 시각 또는 청각의 문제).	예	아니오	불분명함	장애유형 :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2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응급실을 분기별 1회 이상,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잘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부족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질병명 :
의료적 욕구	3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지루해 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4	항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IT매체(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여 일상 생활이 어렵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사회적· 교육적 욕구	5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성인이나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6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또래와 비교적 잘 어울리고, 또래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 표현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모와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떼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8	자아존중감이 높다(아동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9	정학·유급·퇴학 경험이 있다(학교폭력의 문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0	학업성취도가 높다(학습에 대한 의욕 및 동기가 높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업 외 기타 교육적 욕구 :
		어려운 단어를 잘 읽는다. 학업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며, 학업수행에 대한 보람과 유능감을 느낀다.				
1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문제 행동	12	섭식 문제가 있다.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떼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분노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 행동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13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4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구분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5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밥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장애 포함,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게 어렵거나, 숫자를 다루거나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7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지능이 낮거나(경계선급 지능수준) 적응 행동에 문제가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분리 보호 관련	18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희망보호유형 : (예) 친인척, 가정 위탁, 시설, 입양 등
	19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만남 주기 :
소 건						

서식 8 개별보호 · 관리계획서

개별보호 · 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 중복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혼부모·혼외자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가출 <input type="checkbox"/> 비행·부랑 <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빈곤·실직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질병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수감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진
신원 ※ 신원불명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원 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원 불명				182신고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아동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보호자 (원가정)	관계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중심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미혼모부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육구 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유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유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찰된 보호자의 특성 :						

서식 10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변경)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사례번호 _____											
상담의뢰처		상담장소		상담일시							
내담자		상담차수		상담원							
구 분		친 모					친 부				
인적 사항	이 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거주지										
	연락처										
	최종학력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④ 사별(배우자사망일 :) ⑤ 이혼(이혼일 :)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④ 사별(배우자사망일 :) ⑤ 이혼(이혼일 :)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신체특성	키 / 체중	cm / kg					cm / kg				
	혈액형	RH / 형					RH / 형				
	기타 신체특성										
병력 및 건강상태	성장시 병력										
	현재 건강상태										
	가족의 병력										

구 분		친 모		친 부		
성장배경	가족관계	가족구성 및 가족과의 관계 기록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의 구성 및 각 구성원과의 관계 기록 (가장 친한 형제자매 등)				
	사회적 심리적 성장배경	성장과정에서의 심리 사회적 변화 기록 취미 또는 특기,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				
친모와 친부의 관계	만남 ~ 관계 상황	최초 만남 시기, 만남 계기, 동거 여부(기간) 등 기록				
	현재 교제 및 연락여부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경험	무 / 유 ()명	분만아동 상황	양육 ()명, 입양 ()명		
	최초 인지시기	임신 ()주				
	산전진료 결과	시기와 횟수 기록, 전반적인 건강상태, 위험상황 기록				
	임신기간 중 질환	병명				
		발병시기				
		치료여부				
	임신 중 음주 및 흡연, 약복용		복용여부	빈도	종류 및 복용량	현재 복용여부
		음주				
		흡연				
		약복용				
양육관련	직접 양육가능성	매우 가능() 가능함() 잘 모르겠음() 불가능함() 절대 불가함()				
		상세 사유 :				
	경제적 자원	자산 ()원, 월소득()원, (취약계층 구분 등)				
	원가정 보호를 위한 양육 도움 지원	가정방문: ()회, 지원내용 기술				
		상담: ()회, 지원내용 기술				
		사회적 심리적 지원: ()회, 지원내용 기술				
- 경제적 지원 : ()회, 지원내용 기술						
- 기타 사항: 양육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						
입양 관련	입양진행 시 바람	아동 장애에 대한 의견				

서식 12 후견인 상담기록지


<h2 style="margin: 0;">후견인 상담기록지</h2>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사례번호 _____</p>					
내담자		상담원		상담일시 및 장소	
구 분		내 용			
인적 사항	이 름				
	생년월일				
	현거주지				
	연락처				
아동 보호 현황	보호 개시일				
	시설 정보	기관명 : _____ 주소 : _____			
기타사항					

서식 14 아동 상담기록지 (신규)

<h2 style="margin: 0;">아동 상담기록지</h2>					
					사례번호 _____
상담의뢰처		상담장소		상담일시	
내담자		상담차수		상담원	소속기관 :
상 담 내 용					
인적 사항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아동 주 소지			
	연 락 처				
	재학(취학)현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 해당없음 () 학년 () 반			
아동의 특성	성격				
	관심사항				
아동이 생각하는 주변과의 관계	주양육자와 관계				
	또래 관계				
	그 외 적응상황				
입양 관련	입양에 대한 이해도	예) 입양에 대한 생각 변화 예) 입양 후 새로운 가족과 학교, 환경 등 변화에 대한 이해도 예) 아동이 생각하는 걱정 및 두려움의 변화			
	입양에 대한 의사 변화	<input type="checkbox"/> 긍정적 <input type="checkbox"/> 부정적 <input type="checkbox"/> 확인불가			
	입양 관련 원하는 점	예) 입양진행시 바람(원하는 부모, 가정환경 모습 등)			
	궁금한 점 질문	입양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 라고 답했다면 질문내용(답변내용) :			
기타 사항					

서식 15 아동 상담확인서 (신규)

아동 상담확인서					
아동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담원	성명		총 상담횟수	회	
	소속기관		상담일자	1차	상담횟수만큼
				2차	기록하며
	직급			3차	4회 이상인 경우
				4차	복사하여 사용함



- 저는 앞으로 저에게 새로운 부모님, 형제자매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저는 입양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 저는 제가 동의해야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저는 법원에서 부모님을 확정 해주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제가 어떻게 입양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저는 위 내용을 모두 설명 받았고 이해했습니다.

년 월 일

아동
서명 (인)

서식 1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아동	성명		생년월일 (출생월일)
	시·군·구명		
친모	성명		생년월일
	시·군·구명		
입양의뢰 상담 시·군·구 및 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및 연락처
원가정 양육 결정일			
모니터링 일시			
모니터링 주요 내용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기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필요 여부			
기타			
연계서비스 관련기관 연락처			

서식 17 일시 보호 의뢰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일시 보호 의뢰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보호 의뢰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그 밖의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탁보호자 귀하

서식 19 입양 동의·승낙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입양 동의·승낙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입양에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양자가 될 아동 (서명 또는 인)

☞ 이 부분은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서식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사유(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 친생부모가 없는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가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첨부서류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번호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알콜중독 <input type="checkbox"/> 약물남용 <input type="checkbox"/> 도박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	아니오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예	아니오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사진 필수 첨부) <사진>	예	아니오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input type="checkbox"/> 연락 주기 :	예	아니오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예	아니오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예	아니오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서식 22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미첨부 사유서 (변경)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미첨부사유서

- 대상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미첨부 사유
- 친생부(모) :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장명 등 인적사항 파악여부, 친생부(모)와 최근 연락한 사항, 회수 및 응답여부 등 작성
(예시) 친생부 사망, 연락두절 등으로 이름과 연락처, 소재지 등을 모름
 - 시·군·구 상담자 : 친생부(모)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친생모(부)와 상담한 회수 및 내용, 관계기 관(읍면동, 경찰 등)에 협조요청 여부, 친생부(모)의 정보를 파악한 경우 전화 연락 또는 주소지 방문 등의 노력 여부 등 작성
(예시) 친생모와 세 차례 상담을 하면서 아동의 입양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친생부모 모두의 입양동의가 필요하고, 추후 친생부가 아동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입양의 취소 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

년 월 일

친생부(모)	성명	(인 또는 서명)
시·군·구 상담자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뒤쪽)

가정환경 (성장 과정)			
상담자 의견			
지도· 판정			
금품 지급사항			
소속	직위	작성일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서식 24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변경)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대면개최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면(영상회의 포함) <input type="checkbox"/> 서면
회의종류	<input type="checkbox"/> 보호조치 결정 <input type="checkbox"/> 보호조치 변경 <input type="checkbox"/> 보호종료 결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총 명
회의내용					
의결사항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변경				
	보호종료 결정				
특이사항 등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 ※ 입양대상아동별 작성

심의일	(정기/수시)	<input type="checkbox"/> 사전	<input type="checkbox"/> 사후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서면
보호조치 유형					
심의안건					
아동 사항	아동명		생년월일/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학교		학년		
	보호유형		보호일자		
주요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원안가결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가결 <input type="checkbox"/> 심의보류 <input type="checkbox"/> 재심의 <input type="checkbox"/> 심의의뢰 <input type="checkbox"/> 부결				
심의결과 세부내용					
특이사항 등					
작성자 (작성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	.	.	

서식 25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앞쪽)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심의 후 7일			
대 상 아 동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 호 시 설 (기 관)	보호유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입양		
	시설(기관)명 (피해아동의 경우 미기재)		
결정(변경) 일자		조치 일자	
<p>「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결정(변경, 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시장 · 군수 · 구청장 인</p> <p>아동 · 보호자 · 기관 귀하</p>			

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보호기간 동안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처리 시 현재 가정 내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중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3. 시설입소 후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으로 전학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설 적응 등으로 인해 전학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에 교환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아동은 입소한 시설 내 생활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규칙은 시설마다 상이)
5. 시설 입소 후 보호자의 아동면회가 아동의 시설 부적응 및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아동에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의 동의를 통해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입소한 시설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을 재확인하여 전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추후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라 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가 진행되며, 동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근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주기 및 방법 안내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을 포함,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추가 1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원가정 복귀 후 6개월부터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 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9.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서식 27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 아동과의 관계 ▶ 친생부 [] ▶ 친생모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상 아동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지 회신방법	[] 우편(신청인의 위 주소)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_____)		
	[] 문자메시지(연락처: _____)		
	[] 전화(연락처: _____)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의 입양절차 진행, 건강 및 복리 상태에 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 28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 아동과의 관계 ▶ 친생부 [] ▶ 친생모 []
	주소	
대상 아동 (자녀)	성명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소	
후견인	■ 후견인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원이 정한 후견인 [] 시설미성년후견인 []	
위탁보호	■ 유형: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위탁가정 [] 기태 []	
통지 회신방법	[] 우편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_____) [] 문자메시지(연락처: _____) [] 전화(연락처: _____)	
회신 내용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 건강 및 복리 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9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신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입양대상 아동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인계자	000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서명)
	시설(위탁가정)등 관계자	담당자:	(소속)/(성명)	(서명)
인수자	000시·군·구	담당자:	(소속)/(성명)	(서명)
	시설(위탁가정)등 관계자	담당자:	(소속)/(성명)	(서명)
인도일자	년 월 일			
인도장소				
<p>「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000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000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을 인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p>				

서식 30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신규)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입양대상 아동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일생(세, 월)	
입소기간	년 월 일(입소일)			
	~ 년 월 일(입양허가/임시양육결정일)			
입소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대표자명)			
참관인	000시 · 군 · 구	담당자: (소속)/(성명) (서명)		
	000시 · 군 · 구	담당자: (소속)/(성명) (서명)		
	시설(위탁가정) 등 관계자	담당자: (소속)/(성명) (서명)		
<p>「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000시장(군수 · 구청장)이 입양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한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위의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div>				

서식 31 아동 양육상황 월별 기록지 (변경)

아동 양육상황 월별 기록지 (○○년 ○○월)

아동명					아동 생년월일				
작성일					보호자(작성자)명 / 소속				
A. 아동의 애착과 유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이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족과 잘 융화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과 가장 가까운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위탁부 <input type="checkbox"/> 위탁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호자()									
3. 아동과 아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애착 및 유대형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서술) 아동이 가족구성원과 어떻게 융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6. (서술) 애착 및 유대 형성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B. 아동의 일상생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의 하루일과(배변, 수면, 식사 등)는 규칙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어떤 놀이유형을 가장 좋아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신체놀이 <input type="checkbox"/> 역할놀이 <input type="checkbox"/> 언어놀이 <input type="checkbox"/> 미술놀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선택시 서술)									
3. 배변활동은 어떠한가요? • 소변 : 1일 ____회 • 대변 : 1일 ____회					<input type="checkbox"/> 규칙적인 배변활동을 함	<input type="checkbox"/> 배변활동이 불규칙적이지만, 힘들어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배변활동이 불규칙하고, 힘들어함		
4. 수면상태는 어떠한가요? • 낮잠 : 1일 ____회, 회당 ____시간 ____분 • 밤잠 : 잠에드는 시간 ____시 ____분 일어나는 시간 ____시 ____분					<input type="checkbox"/> 수면 양호	<input type="checkbox"/> 쉽게 잠에 들지 못하지만, 잠에 들면 충분히 수면을 취함	<input type="checkbox"/>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보임		
5. 식습관(수유, 이유, 식사)은 어떠한가요? • 수유 : 1일 ____회, 양 ____cc • 이유식 : 1일 ____회, 양 ____ml • 일반식 : 1일 ____회					<input type="checkbox"/> 식사(수유/이유) 양호	<input type="checkbox"/> 이따금씩 식사(수유/이유)를 거부함	<input type="checkbox"/> 식사(수유/이유)하기 힘들만큼 잘 먹지 않음		
6. (서술) 아동의 하루일과 및 일상생활(배변, 수면, 식습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예 : 이따금씩 수유를 거부함, 배변활동이 불규칙적임, 쉽게 잠들지 못하지만 잠에 든다면 충분히 수면을 취함 등)									

C. 아동의 감정상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의 감정표현은 월령에 맞게 양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서술) 아동의 감정상태(표현)는 어떠합니까? 아동의 감정표현(상태)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D. 아동의 양육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을 양육하면서 크게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을 양육하시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잘 해결해 나갔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서술) 아동 양육 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5. (서술) 아동 양육에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E. 가정 내의 중대한 변화				
1. 가정 내에 혼인상태, 자녀, 경제상태, 주거환경 또는 건강 문제 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변화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가 없다				
2. (서술)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F. 기타 사항				
※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시시오.(특별육구(의료 등) 관련 사항 포함)				
※ 그 외에 양육과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시시오.				

서식 32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변경)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차)

아동 이름	(성별: 남/여)	아동 생년월일	년 월 일 (현재 개월)		
모니터링 날짜 및 방법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방문(장소:)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유선	모니터링 참여자	<input type="checkbox"/> 위탁부 <input type="checkbox"/> 위탁모 <input type="checkbox"/> 시설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모니터링 시간	시 분 ~ 시 분 (총 분)	모니터링 조사자	(소속: 시/군/구청 과)		
모니터링 조사자 연락처		입양 절차 진행 단계	<input type="checkbox"/> 결연 전 <input type="checkbox"/> 결연 후(<input type="checkbox"/> 임시양육)		
1. 양육상황점검 모니터링			예	아니오	해당없음
(필수) 아동 발달 모니터링	애착·적응·심리	- 아동이 주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 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아동이 동거인(주양육자 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 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아동의 애착 및 유대 형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체	-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대근육, 소근육 발달상황 등) ※ 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아동이 또래(연령)에 비해 키, 몸무게가 정상 범주입니까? ※ 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지	-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 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언어	-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 의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회성	- 아동의 사회성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 의견: (예: 아동이 좋고 싫음을 표현할 줄 알며,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필수) 양육 모니 터링	현재상황	- 아동의 하루 일과(식습관, 수면 등)는 규칙적입니까? ※ 의견 :	□	□	□
		- 아동을 위한 안전한 물리적 공간(방, 침대 등)이 존재합니까? ※ 의견 :	□	□	□
		- 아동이 생활하기에 환경이 위생적입니까? (신체, 의복, 방 청결, 가정 물품 정리 상태, 놀이감 위생 상태 등) ※ 의견 :	□	□	□
	문제행동	- 아동에게 식습관(식사 거부 등) 관련 문제가 있습니까? ※ 의견 :	□	□	□
		- 아동이 공격적, 반항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충동 조절 어려움, 공격적 표현, 행동 통제 어려움 등) ※ 의견 :	□	□	□
		-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스스로 위생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까? ※ 의견 :	□	□	□
(선택) 특별 육구 모니 터링	의료적· 신체적	- 아동이 의료적(신체적)으로 지원 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치료·서비스 내용 기술 등 ※ 향후 계획 :	□	□	□
	정신적	- 아동이 정신적(심리적)으로 지원 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치료·서비스 내용 기술 등 ※ 향후 계획 :	□	□	□
	행동·사회 ·인지	- 아동의 행동·사회·인지적으로 지원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치료·서비스 내용 기술 등 ※ 향후 계획 :	□	□	□
	교육적	-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지원 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교육 서비스 지원 내용 등 ※ 향후 계획 :	□	□	□
	기타	- 그 외 아동에게 특별한 육구가 있을 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	□	□

2. 기타 모니터링		
전문가 모니터링 사항	※ 특별육구 아동의 경우 필수 작성 해당 모니터링 차시에 전문가 모니터링(소아과 전문의, 심리평가전문가 등)이 실시되었다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록함.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이 실시된 바가 있다면, 별도로 심리평가보고서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 등의 사본을 첨부함.	
아동 면접 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대면) <input type="checkbox"/> 이행 총 ()회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비대면) <input type="checkbox"/> 이행 총 ()회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 이행불가
	이행 사유	※ 면접교섭 미이행 사유 <input type="checkbox"/>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병리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직장문제(근로) <input type="checkbox"/> 금전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교섭주기 미도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행 내용	면접교섭 내용, 특이사항, 아동소감, 작성자 의견 등
기타 중요 관계인과의 내용	아동의 친구, 선생님 등 아동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상담 또는 내용에 대해 기록	
기타 특이사항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 이외의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	
모니터링 사진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년 월 일 조사자: _____ (서명)		

서식 34 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 (신규)

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

※ 해당하는 대상에 V표시하고 해당 칸을 작성해 주세요

결연 결과	양자가 될 사람		성명	생년월일
			실거주지 (상세주소 생략, 시·군·구까지 작성)	
※ 사무국 작성	양부모가 될 사람	예비 양부	성명	생년월일
			실거주지 (상세주소 생략, 시·군·구까지 작성)	
		예비 양모	성명	생년월일
			실거주지 (상세주소 생략, 시·군·구까지 작성)	
결연 수용 의사 (작성인 : <input type="checkbox"/> 양자, <input type="checkbox"/> 양부모)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불수용 사유	
※ 결연 수용 의사 작성인이 양자인 경우 작성			성명	생년월일
			실거주지 (상세주소 생략, 시·군·구까지 작성)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택1) (<input type="checkbox"/> 친생부모,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실거주지 (상세주소 생략, 시·군·구까지 작성)	

상기인은 입양정책위원회 결연 심의에 따라 추천된 결연 결과의 수용 의사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수용)자 : 아동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수용)자 : 아동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수용)자 : 아동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6 결연확인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결연확인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부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모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결연 심의일	년 월 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연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7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서(지자체) (신규)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서(지자체)

신청인	지자체명	
	전화번호	담당부서/직원
	주소	
입양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사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1항 1~4호

- | | |
|---|--|
|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 2. 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
| 5. 그 밖의 사항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대법원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의 입양대상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예비양부모)에 대한 임시양육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가정법원 귀중

첨부서류	1. 법원 접수증 1부 2. 입양허가신청서 1부 3. 임시양육결정신청서 1부 4. (필요 시)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1부 5. 취소 신청 사유 증빙 서류 1부
------	---

☉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 명단(입양알선비용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1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일자	년 월 일	양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양식은 신청인원 만큼 연장하여 사용가능

☉ 친생부모 및 아동 명단(입양철회비용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1	친생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2	친생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3	친생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4	친생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	친생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 동의일자	년 월 일	입양동의 철회일자	년 월 일

※ 양식은 신청인원 만큼 연장하여 사용가능

서식 41 친양자입양신고서 (변경)

구분		양부				양모				
① 양친	성명	한글 (성 / 영)	본(한자)	한글 (성 / 영)	본(한자)	한글 (성 / 영)	출생연월일	한글 (성 / 영)	출생연월일	
		한자 (성 / 영)	출생연월일	한자 (성 / 영)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② 양친	성명	한글 (성 / 영)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영)	성 별	① 남 ② 여	출생연월일	
		한자 (성 / 영)	성 별	① 남 ②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주 소		주 소		종전의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본(本)	한글
③ 친양자	변경된성(姓)	한글	한자	변경된본(本)	한글	한자	변경된본(本)	한글	한자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① 소 제기자 ② 소의 상대방 ③ 기타(자격 :)								
	주 소									
⑦ 제출인	전 화				이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⑥란: 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 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친양자 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1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식 42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변경)

구분		양부			양모			
① 양	성명	한글 (성 / 영)	본(한자)	한글 (성 / 영)	본(한자)			
		한자 (성 / 영)	출생연월일	한자 (성 / 영)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친주	등록기준지							
	주소							
② 친양자	성명	한글 (성 / 영)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영)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 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 소 제기자 ② 소의 상대방 ③ 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⑦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란: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⑦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친양자 입양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1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식 43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변경)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① 부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 적용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적용방식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원방식		<input type="checkbox"/> 사후지원방식	
④ 계좌번호	은행(예금주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1.2em;">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작성요령</p> <p>① 입양아동이 기재될 건강보험증 상의 세대주를 기재합니다.</p> <p>② 의료급여를 적용할 아동을 기재합니다.</p> <p>③ 원하는 적용방식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면제 -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본인부담금 환급 <p>④ 사후지원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 -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뒤쪽)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나.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양아동에게 장애 등이 있는 경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입양아동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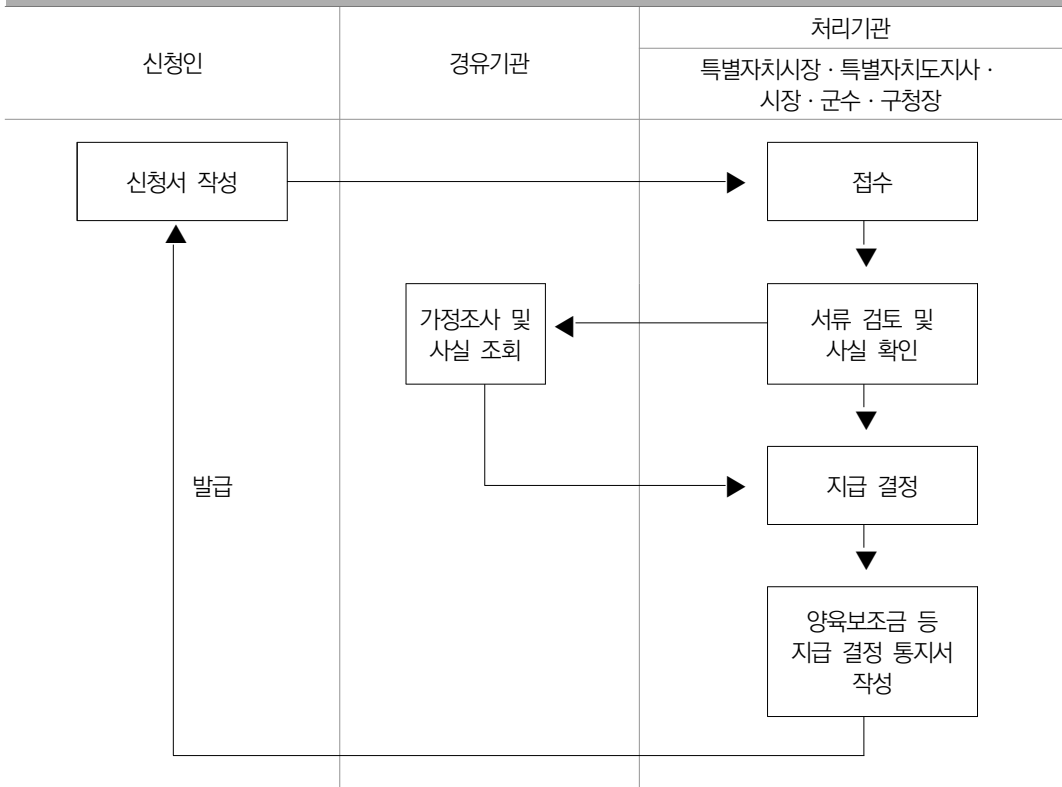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서식 45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신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양육수당
[] 의료비
[] 그 밖의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 결정(적합)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급여내용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 결정(대상제외)

대상제외사유	
--------	--

귀하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안내 사항

-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는 그 다음달 20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또한, 지급일(2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서식 46 아동적응보고서 (변경)

아동 적응보고서(회)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작성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	
연락처		성명	
모니터링 기간		면담인	[]부
면담 차수			[]모
면담 일시			[]아동
면담 장소			[]기타
			(성명 : 생년월일 :)
		※ 아동과의 관계 :	

A. 아동 기본 정보

1. 아동 가정 정보

아동	입양 전 성명	입양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출생 주소	
	현재 주소	
	※ 실제 주소와 서류상 주소 확인	
	양부모와 동일한 국적취득 [] 예 [] 아니요 ※ [예]의 경우 아동이 취득한 국적 명과 사유 기재 국적명 : 사유 :	실제 양육개시일
입양확정일	친양자입양신고일	
양부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특이 사항
양모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특이 사항

동거인	형제/자매	성명	특이 사항
		생년월일	
	형제/자매	성명	특이 사항
		생년월일	
	조부모	성명	특이 사항
		생년월일	
	기타 보조양육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특이 사항

B. 아동 발달 상황 및 특별요구

1. 아동 발달상황

인도 직후 상황	키	cm	현재 상황	키	cm
	체중	kg		체중	kg

a. 개월 수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

건강검진 여부	[] 실시(일자 :)	
	[] 미실시	
필수 예방접종 여부	[] 실시(종류: 일자 :)	
	[] 미실시	

* 미실시 체크한 경우 아래 필수 작성

- 미실시 사유 :

- 실시계획 : 년 월 일

병원 치료 (외상치료, 심리상담 등)	[] 입원	기간 병력	년 월 일 ~ 년 월 일
	[] 통원	횟수 병력	

b. 병력, 외상 등에 따라 적절한 병원 치료를 진행 상황

- 병원 치료 사유 :

- 관련 기관 :

아동 관련 사항	식사 및 수면 상태	a. 식습관(수유, 이유, 식사)
		[] 규칙적임
		[] 이따금씩 식사(수유/이유)를 거부함
		[] 식사(수유/이유)하기 힘들만큼 잘 먹지 않음

	<p>b. 수면상태</p> <p>[] 양호함</p> <p>[] 쉽게 잠에 들지 못하지만, 잠에 들면 충분히 수면을 취함</p> <p>[]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보임</p> <hr/> <p>- 근거 :</p> <p>- 의견 :</p>
<p>신체 발달</p>	<p>ex) 대근육(걷기, 달리기, 뛰기, 계단 오르기) 및 소근육(물건 쌓기, 작은 물건 집기, 가위로 자르기 등) 발달 상황</p> <p>ex) 병력 사항이나 장애가 있었던 경우 현장 상태나 치료 과정, 얼굴색, 체격, 흉터, 상처, 틱 증상, 대소변 상태, 대소변 가리기 등</p> <p>※ 발달 상태 체크하고 의견 작성</p> <p>[]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약간 더딤(지속적인 관찰)</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짐</p> <hr/> <p>- 근거 :</p> <p>- 의견 :</p>
<p>운동 발달</p>	<p>※ 발달 정도 체크하고 의견 작성</p> <p>[]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약간 더딤(지속적인 관찰)</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짐</p> <hr/> <p>- 근거 :</p> <p>- 의견 :</p>
<p>인지발달</p>	<p>ex) 인지 발달, 지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학습력, 자율성 등</p> <p>※ 발달 상태 체크하고 의견 작성</p> <p>[]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약간 더딤(지속적인 관찰)</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짐</p> <hr/> <p>- 근거 :</p>
<p>사회성 발달</p>	<p>ex) 성격, 기질, 애착 관계, 일반적 행동에 대한 변화 정도 기술</p> <p>※ 발달 정도 체크하고 의견 작성</p> <p>[]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약간 더딤(지속적인 관찰)</p> <p>[]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짐</p> <hr/> <p>- 근거 :</p>

언어발달	※ 발달 정도 체크하고 의견 작성 <input type="checkbox"/>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 <input type="checkbox"/>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약간 더뎠(지속적인 관찰) <input type="checkbox"/> 연령에 비해 발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짐 - 근거 :
	(필요시 작성) 새로운 언어 습득 여부 <div style="text-align: right;">[] 예 [] 아니요</div> * 습득 언어 ()

c. 아동의 특별육구 여부

[] 예 [] 아니요

* 상세 내용 기술

ex) 무엇인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입양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d. 입양 후 아동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변화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 체크 시 작성)

*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발견된 건강 이슈에 관해 기술

C. 아동 양육 상황 및 적응 현황 (출신, 교육, 입양가정 · 친생가족과의 관계)

1. 애착관계

a. 아동이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상

[] 양부 [] 양모 [] 형제자매 [] 조부모 [] 기타 양육자
 (관계 :)

b. 아동이 힘들 때 주로 의지하는 대상

[] 양부 [] 양모 [] 형제자매 [] 조부모 [] 기타 양육자
 (관계 :)

양부	애착상태 <div style="text-align: right;">[]양호 []보통 []미흡</div> 관계기술 (ex. 가족과의 적응 등)
양모	애착상태 <div style="text-align: right;">[]양호 []보통 []미흡</div> 관계기술 (ex. 가족과의 적응 등)

동거인	애착상태
[] 형제/자매	[] 양호 [] 보통 [] 미흡
[] 조부모	관계기술 (ex. 가족과의 적응 등)
[] 기타 양육자	

2. 적응 현황

a. 일상에서의 아동과 양부모의 환경·문화 수용 정도

b.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및 변화 정도 (ex. 분노, 실망, 행복, 사랑 등)

c. 사회적 관계(환경) 안에서 아동의 적응 상황 (ex. 지원그룹, 친구, 선생님 등)

d. 입양에 대한 양부모의 현재 인식 변화

e. 입양 이후 입양부모가 느낀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 체크 시 작성)

(ex. 아동 양육, 새로운 부모 역할 적응, 입양이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

e-1. 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해결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세요.

f. 입양 이후 아동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 체크 시 작성)

(ex. 적응, 또래 관계 등)

f-1. 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해결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세요.

g. 문제해결 및 지원 사항

* 입양 후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받은 사항 작성

h. 입양 전 양육자 또는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입양 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 체크 시 작성)

- 관계 :

- 연락 유형 및 빈도 :

(ex. SNS, 편지, 전화, 영상통화, 만남 등)

3. 양육환경

양육방법	[] 직접 양육 (주__회, 일__시간)
	[] 조부모 양육 (주__회, 일__시간)
	[] 어린이집 (주__회, 일__시간)
	[] 기타 ()
	- 의견 : ex) 보호자 없이 아동을 가정 내 두고 외출하는지 등, 아동의 출입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데리고 가는지 등(클럽, pc방 등)
주거 환경	주거의 안전·위생 등 [] 양호 [] 미흡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지 여부 등)
주변 환경	※ 1차 필수 작성, 이후 변화 발생 시 작성 병원·경찰서,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혐오시설 등 [] 양호 [] 미흡

a. 입양 이후 가정 내 중대한 변화 여부

[] 예 [] 아니요

(예 체크 시 작성)

ex) 결혼상태, 거주, 고용, 동거인, 질병, 사망 등

4. 교육현황

a. 아동의 재학(재원) 현황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학년) [] 중학교(학년)

[] 고등학교(학년) [] 기타()

a-1 아동이 재학(재원) 중인 곳의 생활 상황을 작성해 주세요.

b. 아동에게 심리지원 및 학습지원에 대한 추가 필요성 여부

[] 예 [] 아니요

(예 체크 시 작성)

- 근거:

c. 아동이 좋아하는 특별 활동 여부

[] 신체활동/스포츠 :

[] 문화 활동 :

[] 게임(놀이) :

[] 기타 사항 :

D. 추가 의견 및 권고

- ※ 2차 이상의 경우, 앞 차수와 비교하여 작성
- ※ 마지막 사후관리 시 새로운 욕구가 파악된 경우, 관련 서비스 및 사업 연계 등 결과는 추가 작성
- ※ 「국내입양특별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후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유와 연장기간 작성

[] 종합 검토 의견

-
-
-

E. 첨부 서류

건강검진	[] 유, [] 무 (사유:)
백신접종확인서	[] 유, [] 무 (사유:)
예방접종확인서	[] 유, [] 무 (사유:)
가족관계증명서	[] 유, [] 무 (사유:)
주민등록등본	[] 유, [] 무 (사유:)
기타(1)	[] 유, [] 무 (상세:)
기타(2)	[] 유, [] 무 (상세:)

년 월 일

위탁기관의 장

직인

2025년 입양실무 매뉴얼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